국세청
www.nts.go.kr

NATIONAL TAX SERVICE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201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연금수령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세수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금소득의 경우 2002년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체계가 대폭 개정되었고, 2013년에는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납입한도를 확대하였으며, 2016년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완화하는 등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의 경우 2013년에 퇴직소득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등 꾸준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과세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관련 조세법령도 어렵게 서술되어 있어 일선 직원들이 이해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책자는 2017년에 이은 개정판으로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소득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신 유권해석과 주요문답 사례 등을 보강하였으며, 지급명세서 및 신고서 작성 방법을 보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를 통해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이 업무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9월

법인납세국장 임 명 빈

CONTENTS

퇴직 ·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제1장 퇴직급여제도 / 1

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2

가. 퇴직금제도 ····· 3
나. 퇴직연금제도 ····· 5

제2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 17

1. 퇴직소득의 범위 ····· 20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20
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24
다.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금 ····· 30
라.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 34

2. 퇴직소득 수입시기 ····· 35

가. 원칙 ····· 37
나. 임원 특례 ····· 37

3. 퇴직소득공제 ····· 43

가. 공제금액 계산 ····· 43
나. 근속연수 계산 ····· 45

4.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 48

가. 과세표준 ····· 48
나. 산출세액 ····· 48
다. 세율 ····· 50

5. 퇴직소득세 이연 ····· 51

가. 이연퇴직소득 ····· 51
나.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 52
다. 퇴직소득세 환급 ····· 53
라. 연금계좌취급자 통보 ····· 58

6.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 59

가. 정산 대상 ····· 59
나. 정산 특례 ····· 59
다. 정산 방법 ····· 60
라. 근속연수 계산 ····· 61
마. 적용사례 ····· 61

7. 퇴직소득 원천징수 ····· 63

가. 원칙 ····· 63
나. 원천징수 제외 등 ····· 64
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65
라. 원천징수시기 ····· 68
마.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 68
바. 가산세 등 ····· 69

CONTENTS

8. 지급명세서 제출 ····· 70

가. 원칙 ····· 70
나. 예외 ····· 70

9.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71

가. 신고 대상자 ····· 71
나. 신고 예외 ····· 71
다. 제출서류 ····· 71

10.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및 계산 사례 ····· 73

가. 중간지급을 합산하는 경우(2019년 퇴직-세액이연 없음) ····· 76
나. 중간지급을 합산하는 경우(2019년 퇴직-세액이연 있음) ····· 81
다. 중간지급을 합산하고 퇴직금 중 일부만 과세이연한 경우(2019년 퇴직) ····· 86

11.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사용방법 ····· 91

가. 프로그램 내려받기 ····· 91
나. 퇴직소득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세액계산 ····· 94

12. 퇴직소득 Q&A ····· 102

제3장 연금소득 원천징수 / 107

1. 연금소득의 범위 ····· 109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 ····· 109
나.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 111

2. 연금계좌 종류 및 요건 등 ····· 112

가. 연금계좌 종류 ····· 112
나. 연금계좌 납입요건 ····· 114
다. 연금수령 요건 ····· 115
라.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119
마.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 ····· 123
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124
사. 연금계좌의 이체 ····· 133
아. 연금계좌의 승계 ····· 136

〈참고〉 연금저축 ····· 138

3. 분리과세 연금소득 ····· 142

4. 연금소득 수입시기 ····· 143

5. 연금소득 원천징수 ····· 144

가. 공적연금소득 ····· 144
나.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 ····· 149

CONTENTS

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149
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150
마.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50

6.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154

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155
나. 연금소득금액 계산 ····· 155
다. 연금소득공제 ····· 155

7. 연금소득 계산 구조 및 계산 사례 ····· 156

가. DC 에서 IRP 로 이전시 과세이연 ····· 156
나. 과세이연한 퇴직급여를 연금수령하는 경우 ····· 158
다. 과세이연한 퇴직급여를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 158
라. 연금저축에서 연금수령하는 경우 ····· 159
마. 연금저축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 159
바. 배우자의 연금승계 ····· 160
사. 종합사례 Ⅰ ····· 161
아. 종합사례 Ⅱ ····· 171
자. 종합사례 Ⅲ ····· 178
차. 종합사례 Ⅳ ····· 181
카. 종합사례 Ⅴ ····· 184

8. 연금소득 Q&A ····· 187

<참고자료>

1. 2013년 개정 법령 ····· 190
2. 2014년 개정 법령 ····· 199
3. 2015년 개정 법령 ····· 202
4. 2016년 개정 법령 ····· 213
5. 2017년 개정 법령 ····· 214
6. 2020년 개정 법령(안) ····· 215

제 1 장

퇴직급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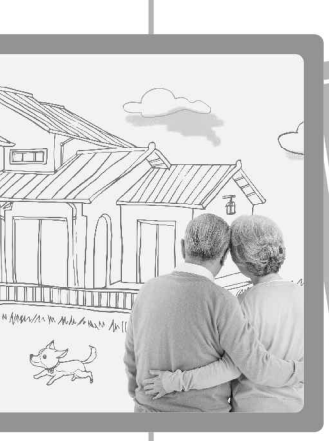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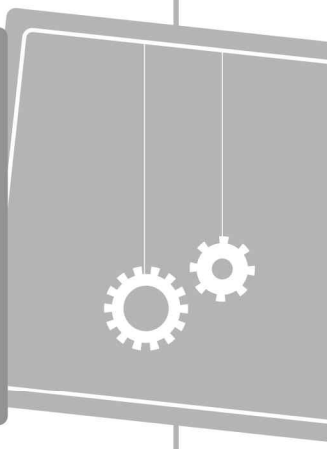

국세청
www.nts.go.kr

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1]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2]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CD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다.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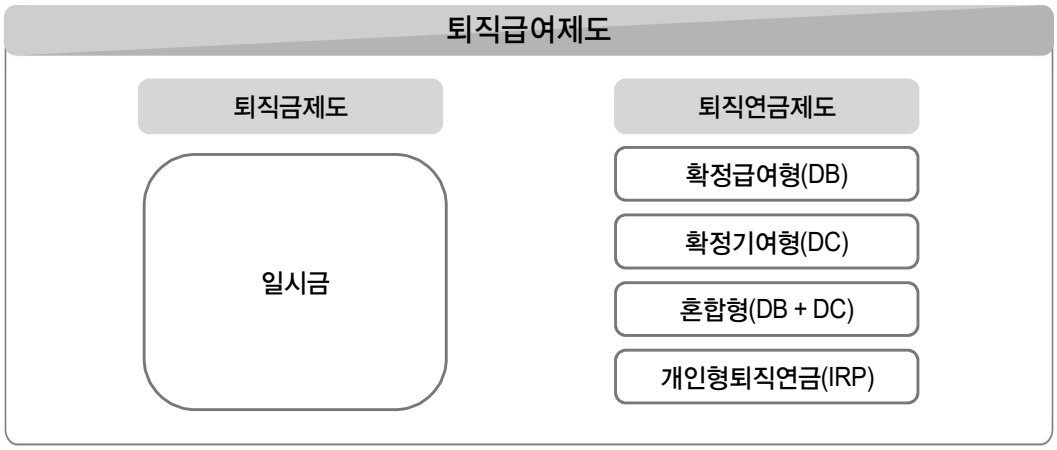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퇴직금제도

1) 개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하고 사내 보유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2) 중간정산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①)

근로자는 아래의 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18.7.1.시행)

  *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시간 단축일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사업장 규모별 · 업종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참고

구분	사업장 규모 · 업종	공포즉시 ('18.3.20)	'18.7.	'19.7.	'20.1	'21.1	'21.7	'22.1
주 근로시간 단축 (68→52시간)	300인~	('18.7.1)						
		(특례 제외 업종, '19.7.1)						
	50~299인				('20.1.1)			
	5~49인						('21.7.1)	
특례업종 축소 (26→5개)	제외(21개)		('18.7.1)					
	유지(5개) 11시간 연속휴가제 (특례도입시)		('18.9.1)					

<특례유지업종 5개>	<특례제외업종 21개>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은 제외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47), 보관 및 창고업(52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우편업(611), 교육서비스업(85), 연구개발업(70),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 괄호안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2자리) 또는 소분류(3자리) 코드

⑥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2015.7.6.)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나 퇴직연금제도

1) 개요

가) 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05.12.1.부터 시행된 제도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퇴직금상당액을 예치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CD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다.

확정급여형(DB형) 제도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반면, 확정기여형(DC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며 근로자가 적립금 운영을 직접 수행한다.

퇴직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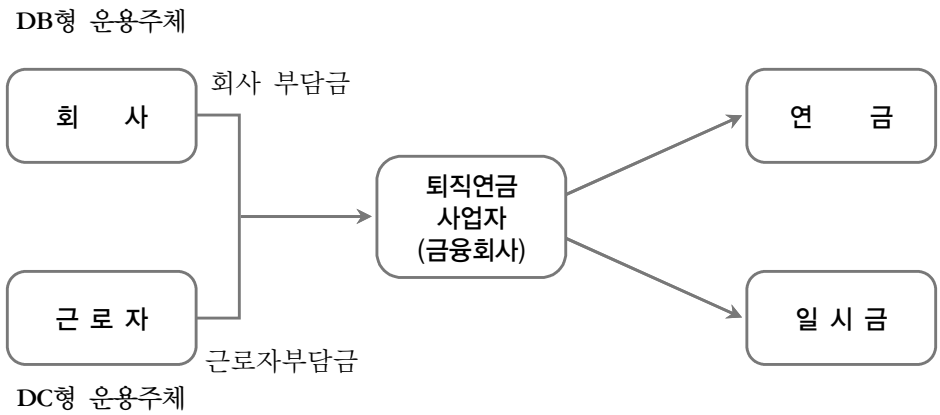

나) 담보 및 양도 제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2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 변경절차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은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음

②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나, 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소급하여 제도 변경 시 아래 표와 같이 변경 가능함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근로자에게 선택권 부여의 경우)	가능여부	비고
DB제도 → DC제도	○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 * 단,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
DB제도 → 퇴직금제도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
DB제도, 퇴직금제도 → 혼합형제도	○	
DC제도 → DB제도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DC제도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 불가)
DC제도 → 퇴직금제도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
DC제도 → 혼합형제도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혼합형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DC제도 적립금은 혼합형제도로 이전 불가)
퇴직금제도 → DB제도	○	퇴직금제도 적용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에 포함
퇴직금제도 → DC제도	○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제도 적용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 * 단,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
혼합형제도 → DB제도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혼합형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 (혼합형제도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 불가)
혼합형제도 → DC제도	○	

*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Plan)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적립금 운용결과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는 자기 책임하에 퇴직자산을 운용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기준책임준비금의 60%를 최소적립금 수준으로 하였으나, 이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연도	2012. 7. 26. ~2013. 12. 31.	2014. ~2015.	2016. ~2018.	2019. ~2020.	2021.~
적립비율	60%	70%	80%	90%	100%

가) 급여 수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급여 수급요건

①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

②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다) 급여 지급방법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2015.12.1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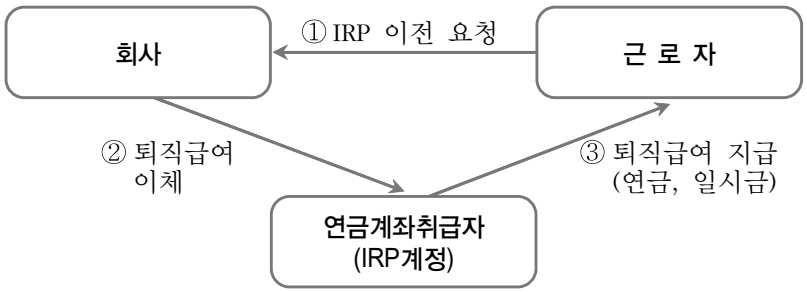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Plan)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정산하고 종업원은 자기 책임하에 퇴직자산을 운용한다.

가) 부담금 납입

① 납입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가입자(종업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② 적용사례

㉮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영성과금** (원천세과-260, 2014.07.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나) 퇴직금 지급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급여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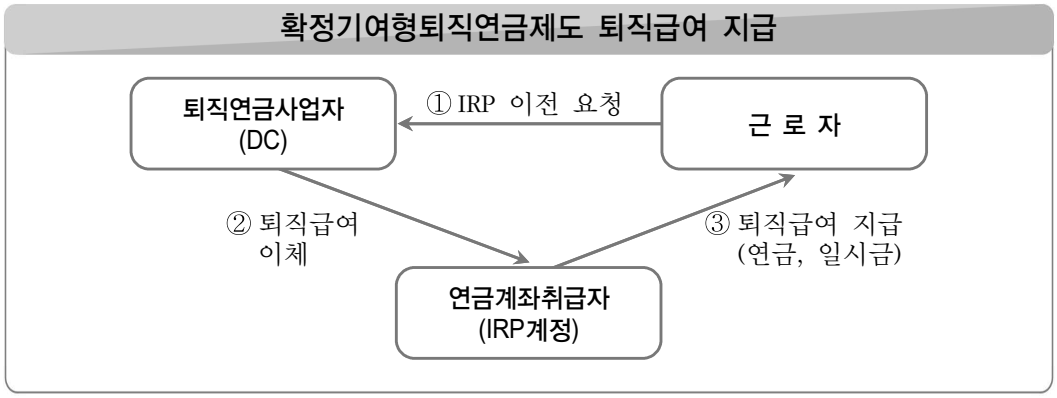

다) 적립금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4)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이다.

종전의 개인퇴직계좌(IRA)[3]는 퇴직 시 또는 중간정산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그 이후에도 계속 운용하기 위한 통산장치 성격이었는데, IRP는 근로자가 재직중인 기간에도 계좌를 만들어서 개인자금을 추가로 불입·운용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연금자산을 IRA로 이전할 의무가 없었으나, 현재는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 시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연금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①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③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7. 7. 26. 이후 허용)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와 개인형 개인퇴직계좌가 있다.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한 경우 확정기여형제도를 도입한 것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 개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하게 된다. 개인형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받은 퇴직금을 저축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계좌로서 직장이전으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대신 노후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은 별정우체국 직원

나) 납입금액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연간 1천800만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다) 급여의 수급요건

① 연금 :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② 일시금 :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급여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제도	DB	DC	IRP 특례	개인형 IRP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중 희망자 ·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부담	-	사용자	· 운용 및 자산관리 : 사용자 ·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table>
<tr><th>구분</th><th>퇴직금 제도</th><th>DB</th><th>DC</th><th>IRP 특례</th><th>개인형 IRP</th></tr>
<tr><td>부담금납부</td><td colspan="4">사용자</td><td>가입자</td></tr>
<tr><td>근로자
추가납입</td><td colspan="2">IRP 개설시 가능</td><td colspan="3">가능</td></tr>
<tr><td>사외적립
부담금수준</td><td>사용자 재량</td><td>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td><td colspan="2">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td><td>(일반적으로)
퇴직금 및 중
간정산금 전액</td></tr>
<tr><td>퇴직급여형태</td><td>일시금</td><td colspan="4">연금 또는 일시금</td></tr>
<tr><td>연금
수령요건</td><td>해당사항
없음</td><td colspan="3">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td><td>55세 이상</td></tr>
<tr><td>퇴직급여
수준</td><td colspan="2">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td><td colspan="3">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td></tr>
<tr><td>운용위험부담</td><td colspan="2">사용자</td><td colspan="3">근로자</td></tr>
<tr><td>중도인출
(중간정산)</td><td>가능
(특정한 사유*)</td><td>불가</td><td colspan="3">가능
(특정한 사유*)</td></tr>
<tr><td>담보제공</td><td>불가</td><td colspan="4">50%까지 가능 (특정한 사유)</td></tr>
<tr><td>적합사업장
및
근로자</td><td>도산위험이
없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업장</td><td>임금상승률이
높거나,
관리능력을
갖춘 사업장</td><td>체불위험
사업장/
이직이 빈번한
근로자, 연봉제
근로자</td><td>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td><td>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td></tr>
</table>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제도유형별 중간정산(중도인출)사유 비교〉

사유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DC(IRP)제도 <중도인출>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	가능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가능	가능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능	가능
④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능	가능
⑤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	가능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가능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능	불가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가능	불가
⑨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가능	불가

* DC제도의 경우 ⑦, ⑧, ⑨의 사유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가입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음

제 2 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퇴직소득 원천징수 개요 ('16~'19년 적용)

종전 규정 방식 (15년 이전 퇴직) + 개정 규정 방식 (16년 이후 퇴직)

퇴 직 소 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 산출세액 ① | 퇴직소득 산출세액 ②

(퇴직소득 산출세액 ① × 20%) + (퇴직소득 산출세액 ② × 80%)
· 종전 규정 방식에 대한 적용비율은 '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 개정 규정 방식에 대한 적용비율은 '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원천징수 — 원칙 : 퇴직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 — 예외 : 연금계좌 이체 등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

확정신고 · 납부
(단,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면제)

퇴직소득 원천징수 개요('20년부터 적용)

퇴 직 소 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원천징수	원칙 : 퇴직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	예외 : 연금계좌 이체 등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연퇴직소득세)

↓

원천징수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

↓

확정신고 · 납부
(단,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면제)

1 퇴직소득의 범위

* **퇴직소득의 범위(소법 §22, 소령 §42의2)**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포함)

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라.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①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③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금을 말한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한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를 포함한다.

* **재직기간 합산제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입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복무)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받고자 할 경우 퇴직 당시 수령하였던 퇴직급여액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종전의 재직기간을 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주는 제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과세기준금액 - 과세제외기여금등

과세제외기여금등이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소법 §51의3)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이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을 말한다.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소령 §40③)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 제77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하였던 사람이 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청구권이 소멸된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로 되었을 때
㉣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① 과세기준금액 : 아래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을 뺀 금액

사례

甲은 2000.1.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8.12.31.까지 15백만원(2002.1.1. 이후 13백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019.1.1. 반환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수령하였다. 반환일시금 이자 5백만원 중 2002.1.1. 이후 납입분에 대한 이자는 4백만원이다. 과세기준금액은 얼마인가?

☞ Min(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금 및 이자, 실제지급받은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금)
= Min(17,000,000, 20,000,000-2,000,000) = 17,000,000

2) 그 외의 공적연금의 일시금

① 과세기준금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times \frac{\text{2002.1.1.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text{총 기여금 납입월수}}$$

사례

丙은 1999.1.1. 군인연금에 가입하여 2018.12.31.까지 4천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019.1.1. 일시금으로 6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에 소득공제 확인 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는 일시금은 얼마인가?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과세기준금액 - 과세제외기여금등
= (60,000,000 × 204 / 240) - 30,000,000 = 21,000,00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14.3.14>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소 득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1. 과세기간별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 공제 명세

④ 확인 기간	2001.1.1. ~ . . .

과세연도	공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계좌 소득 · 세액 공제액	소상공인 소득공제액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득 · 세액 공제 합계액		⑤	

2. 연금계좌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

⑥ 연금계좌 소득 · 세액 공제금액 합계 (⑤)	
⑦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된 연금계좌에서 소득 · 세액 공제 받은 금액	
⑧ 연금계좌 소득 · 세액 공제금액 잔액 (⑥-⑦)	

※ ⑦란과 관련하여 2013.1.1 전에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와 관련된 금액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적용사례

①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법령해석과-0259 , 2018.12.19.)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하는 것임

②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 (소득세과-521 , 2014.09.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③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 (서면법규과-342, 2013.03.26.)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신청한 자가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1) 소득 구분

가) 일반적인 경우

종전에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법령에 열거하였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2013년 이후부터는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여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본다.

예외적인 경우로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나) 임원 특례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규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2) 소득세법상 퇴직판정의 특례

가) 퇴직금 미수령으로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소령 §43①).

①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②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③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2015.2.3.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④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나) 퇴직금 수령으로 퇴직으로 보는 경우

임원을 포함한 근로소득자가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퇴직소득중간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소령 §43②).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2015.2.3. 삭제)

☞ 2016.1.1. 이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는 경우부터 퇴직으로 보지 않음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다) 적용사례

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 (서면법규과-1239, 2014.11.2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한 경영성과금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원천세과-260, 2014.07.15.)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혼합형의 경우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③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서면법규과-596, 2014.06.16.)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한 위로금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원천세과-650, 2013.12.24.)

회사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⑤ **퇴직금지급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 (원천세과-290, 2011.05.19.)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⑥ **전직지원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596, 2010.05.24.)
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⑦ **퇴직금 정산액의 소득구분** (원천세과-137, 201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손실보상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⑧ **계열사간 인력교류** (원천세과-3037, 2008.12.26.)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교류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⑨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 (서면2팀-2110, 2005.12.20)
법인간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로 인하여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⑩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 분할지급** (소득46011-226, 1999.10.22.)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초의 분할지급시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

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2015.2.3. 삭제(2016.1.1.부터 시행 - 퇴직으로 보지 않음)

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나) 적용사례

①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2677, 2016.10.25.)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근무기간 통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2008.4.29.)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할 경우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③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 (서이46013-10840, 2001.12.29)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④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46012-1380, 1998.05.26)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변경 및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괄 퇴직하는 모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다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금

1) 개요 (2016년부터 시행)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란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가입한 공제를 말한다(조특법 §86의3).

2) 소득공제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조특칙 제58의4 서식)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ext{공제금액} = \text{Min}(\text{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 한도액}) \times \frac{\text{사업소득금액} - \text{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text{사업소득금액}}$$

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③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 200만원

3) 수입시기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퇴직소득 과세

아래와 같이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근속연수**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및 제55조(세율)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①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

②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③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④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5) 기타소득 과세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다만,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① 천재·지변의 발생,
②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③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853호, 2014.12.23.)

제24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5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4390호, 2016.12.20.)

제23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서식] <개정 2015.3.13.>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가 입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대 상 기간	공제부금납입방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월납 [ ] 분기납

( )년도 공제부금 납입현황

월별	납입일자	납입금액	비고	월별	납일일자	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①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공제부금 소득공제신청용		
소득공제대상액 (①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위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라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소령 §42의2)

①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사업】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2013.2.15.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 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퇴직소득 수입시기

1) 원칙 (소령 §50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2) 특례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하되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②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4356호, 2013.2.15.)

제37조(이연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및 제115조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이 영 시행 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등(소득세 집행기준 22-50-3)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기로 하고 해당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는 날)'이다.

㉯ ㉮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차 이후의 지급분을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3) 적용사례

①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이 퇴직금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소득-0366, 2015.12.15.)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한 날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원천세과-331, 2011.06.08.)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③ **재정산 퇴직금을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
(원천세과-766, 2009.09.18.)
공공기관 퇴직금규정에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금은 퇴직한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 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어,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임

가 원칙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과세소득[4] 금액은 제외한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 합계액 − 비과세소득

나 임원 특례

1) 임원의 개념 (법령 §40)

임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4) 소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2) 임원 퇴직금액 한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소령 §38①13호)한다[5].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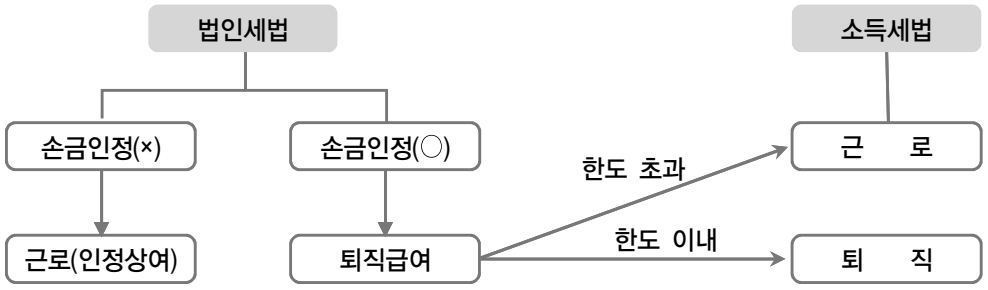

① 「법인세법」 상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법령 §44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5) 2013년 법령 개정으로 이를 명확히 하였다(소법 §20①3호).

- 총급여액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근속연수 :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법 §22③).

$$\text{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times \frac{1}{10} \times \frac{\text{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月)}}{12} \times 3(2^*)$$

* 2020.1.1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근무기간 :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총 급 여 : 봉급·상여 등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6]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다만, 국내 근무 시 지급받는 금액 상당액의 범위로 한정)을 합산한다.

㉮ 임원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 계산시 제외되는 퇴직소득금액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

6)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

이 경우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소령 §42의2⑥).

사례

甲은 2019.12.31. 퇴직한 임원으로 퇴직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는 3,500백만원이다. '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퇴직급여는 1,500백만원(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름)이며, 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은 400백만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

☞ ① 임원퇴직소득 중 한도 적용 대상 금액 : 2,000백만원
퇴직소득금액(3,500백만원) - '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1,500백만원)
②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 960백만원
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400백만원) / 10 × '12년이후근무월수(96) / 12 × 3
③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 : 1,040백만원 = ① 2,000백만원 - ② 960백만원

3) 적용사례

①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지급받은 총급여'에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포함 여부(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 2018.10.29.)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②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시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파견기간 동안 수취한 급여의 포함여부(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99, 2017.05.02.)

임원이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으로 파견되고 파견기간 동안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퇴직금한도 산식의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기간 동안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③ 교수의 사망으로 대학교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법령해석과-3877, 2016.11.25.)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사망자가 근무하던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④ 임원의 범위(서면-2015-법인-22274, 2015.03.20)

「법인세법」 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서면법규과-390, 2014.04.22.)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⑥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원천세과-98, 2014.03.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⑦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 신설(원천세과-60, 2014.02.28.)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⑧ 퇴직금을 반납한 경우(원천세과-516, 2009.06.17.)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원을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⑨ 임원에게 지급하는 합병퇴임공로금(원천세과-236, 2009.03.2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임원이 퇴직하여 합병퇴임공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⑩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3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추후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가 공제금액 계산 (소법 §48)

2015년까지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정률공제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환산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변동하는 차등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소득 수준별로 차등과세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다.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종전방식(2015년 이전)	현행방식(2016년 이후)
□ 퇴직소득 과세방식(①→④ 순서로 계산)	□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 정률공제(40%)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 정률공제(40%) 폐지
② (연분) ① ÷ 근속연수 × 5(연분연승 적용비율)	② (환산급여) ① ÷ 근속연수 × 12
③ ② × 기본세율(6～42%)	③ (②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6～42%)
④ (연승) ③ ÷ 5 × 근속연수	④ (연승) ③ ÷ 12 × 근속연수

1) 종전방식(2015년 이전) 적용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금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정률공제)과 근속연수에 따른 일정금액(근속연수공제)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① 정률공제

퇴직소득금액에 일정비율을 적용

과세기간	2011년~2015년	2006년~2010년	2002년~2005년
공 제 율	40%	45%	50%

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아래의 금액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2) 현행방식(2016년 이후) 적용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퇴직소득금액에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하여 환산급여를 산출하고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차등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근속연수공제 금액 산출시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며,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나. 근속연수 계산”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근속연수로 한다.

①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②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③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 제 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백만원)×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 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 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45%
3억원 초과	1억 5천 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35%

나 근속연수 계산 (소령 §105)

1) 원칙

퇴직소득공제(소법 §48①2호) 및 세율(소법 §55②)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2) 중간정산 특례

퇴직소득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 퇴직소득세액 = ① - ②

①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 (최종퇴직금 + 기지급퇴직금)

② 기지급퇴직금의 산출세액

*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3) 공적연금 관련법 등에 따른 근속연수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공적연금관련법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본다.

퇴직소득의 종류	근속연수	비 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013.1.1. 이후부터 적 용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소법 §22①2)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반납하고(소령 §40②)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소령 §42의2④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013.2.15. 이후부터 적 용

사례

甲은 2006.6.1 입사하여 2019.12.31.퇴사하였다. 이 경우 전체 근속연수 및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2013.1.1이후 근속연수는 각각 얼마인가?

☞ ① 전체 근속연수 : 163월 → 13년 7월 → 14년
②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 : 79월 → 6년 7월 → 7년
③ 2013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 : 14년 - 7년 = 7년

4) 적용사례

①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에서의 근무기간 통산 가능 여부** (원천세과-822, 2016.08.11.)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으로 전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았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을 반영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에도 해당 근무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②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근속연수** (원천세과-768, 2009.09.18.)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휴직기간에 대한 근속연수** (서면1팀-321, 2005.03.22.)

퇴직소득세 계산 시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및 제59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④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근속연수** (원천46013-202, 2002.07.09.)

공무원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기간(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임

4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 (소법 §14⑥)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015년까지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여 환산급여를 산출한 후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나 산출세액 (소법 §55)

1) 종전방식(2015년 이전) 퇴직소득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1.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1.1. 이후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을 빼서 계산한다(①+②).

① 2013.1.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5 \times \text{기본세율} \div 5 \times \text{근속연수}$$

②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text{근속연수}$$

소득세법 부칙(11611호, 2013.1.1.)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현행방식(2016년 이후) 퇴직소득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원 이하	전액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②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③ 경과조치(소득세법 부칙 제12852호, 2014.12.23.)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년 1월 1일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에 따른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 × 연도별 적용비율) + (㉯ × 연도별 적용비율)

〈연도별 적용비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2015.12.31. 이전 계산방법	80%	60%	40%	20%	-
㉯ 2016. 1. 1. 이후 계산방법	20%	40%	60%	80%	100%

다 세율 (소법 §55)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천 200만원 이하	6%	-
4천 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천 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5 퇴직소득세 이연

가 이연퇴직소득

1)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이체시 과세이연 (소법 §146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이연 요건 연혁

○ (2006.02.09 ~ 2008.02.21) 퇴직급여액 전액을 개인퇴직계좌(IRA)에 이체
○ (2008.02.22 ~ 2012.07.25) 퇴직급여액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IRA)에 이체
○ (2012.07.26 ~ 2012.12.31) 퇴직급여액 80% 이상을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 이체
○ (2013.01.01 ~ 현재) 퇴직금을 연금계좌(DC, IRP)에 이체하면(금액제한 없으며, 이체된 금액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퇴직소득으로의 전환 (소법 §146의 2)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소득이연퇴직소득(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과세이연방식 - 소득의 이연과 세액의 이연 *

① **소득의 이연** ('12년 이전)
2012년 이전까지는 퇴직금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시 이체된 퇴직소득은 이연 계좌 인출시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② **세액의 이연** ('13년 이후)
2013년 이후부터는 퇴직시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지만 추후 연금계좌에서 인출시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유예하여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일과 퇴직소득 귀속시기를 일치시켰다.
이후 세제의 통일성을 위하여 2012년 이전 퇴직하여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한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2014년 12월 31일 현재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 전액 인출하여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이연 퇴직소득 잔액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하였다.

나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소령 §202의2)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

1)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이연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연퇴직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text{이연퇴직소득세} =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text{퇴직소득금액}}$$

2)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text{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 \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이 경우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는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②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text{인출퇴직소득 누계액에 대한 세액} = \text{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times \frac{\text{인출퇴직소득 누계액}}{\text{이연퇴직소득 누계액}}$$

3)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퇴직소득세 환급 (소령 §202의3)

이연퇴직소득세 환급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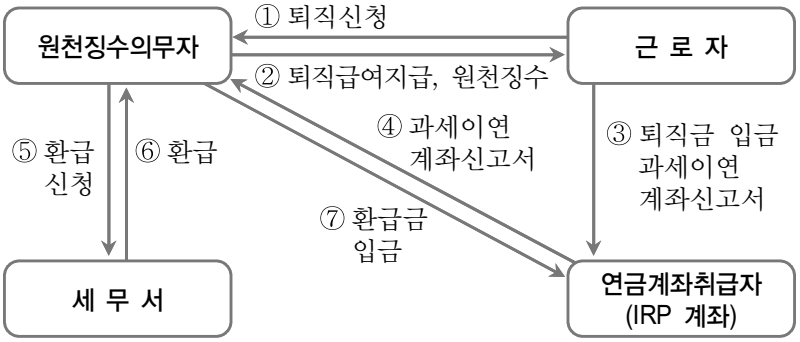

① 환급 신청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 서식)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

연금계좌취급자는 환급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급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세(소령 §202의2①)를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연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④ 폐업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연퇴직소득세 환급신청 절차(원천징수의무자 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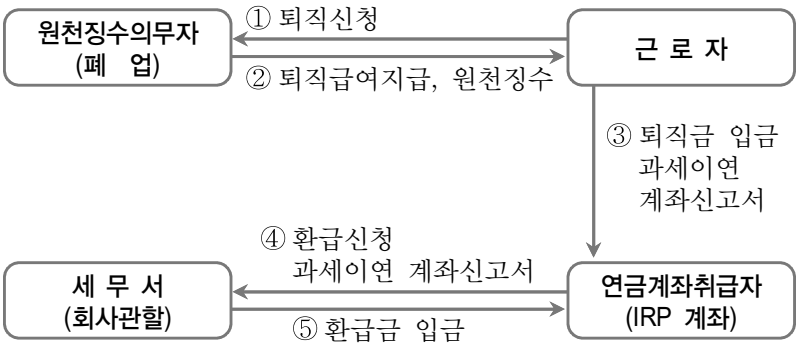

1) 적용사례

① 퇴직소득 과세이연 3년 경과 후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여부
(서면법규과-661, 2014.0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2010.2.18. 개정되기 이전 것)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가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동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때에 같은 령 제203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중간정산퇴직금 개인퇴직계좌 이체 요건(재소득-428, 2006.06.30.)
거주자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7.3.10.>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❶ 퇴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❷ 과세이연계좌 신고사항

(1) 과세이연계좌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예금주)			

(2) 입금내역

일 자		금 액	
① 퇴사일		④ 세후 퇴직급여액	
② 과세이연계좌 입금일		⑤ 입금액	
③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경과일수		⑥ 입금비율(④÷⑤)	

상기 본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과세이연 계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 부 서 류	1. 과세이연계좌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1부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3.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퇴직한 회사의 퇴직소득세 환급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퇴직자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함으로써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②과세이연계좌 (이체)입금일란은 퇴직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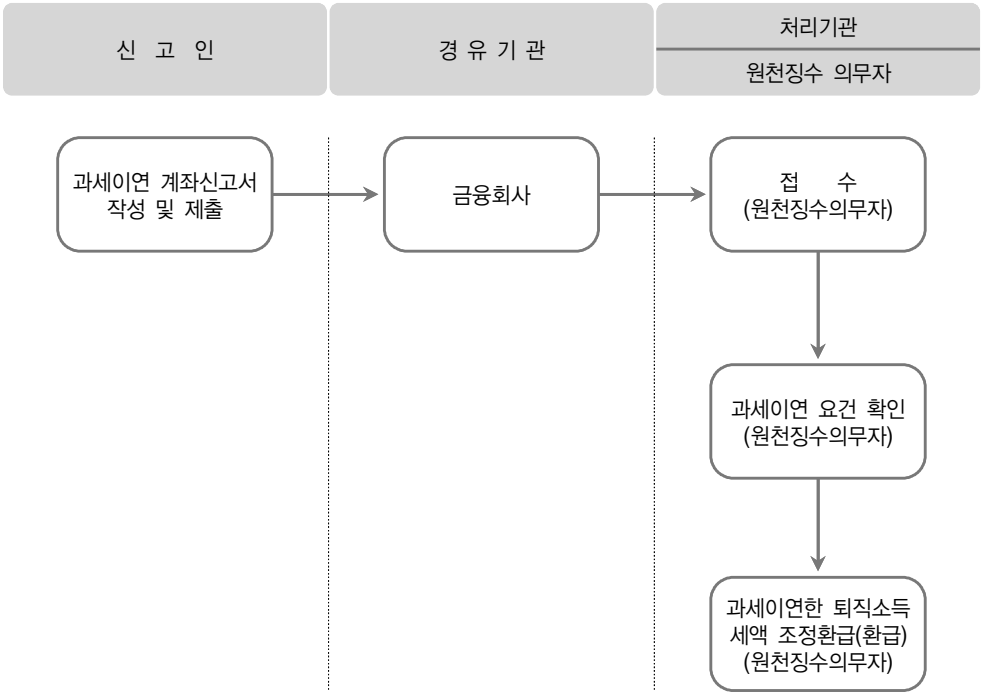

라 연금계좌취급자 통보 (소령 §202의3④)

① 통보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2)]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가산세(소령 §147①, 법법 §75의7)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0.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6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가 정산 대상 (소령 §203)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이 경우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퇴직판정의 특례(소령 §43①)[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나 정산 특례 (소법 §148②)

종전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최종 퇴직금과 세액 정산이 불가능하였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와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

7)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법 §146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세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8].

소득세법 부칙(12852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연혁

○ (~2012.12.31) 퇴직소득 세액정산 하지 않음

○ (2013.01.01 ~ 2016.02.16)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퇴직금을 미수령)만 포함

○ (2016.02.17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또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명확화를 위해 2016.2.17. 이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016.2.16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각호의 사유에 따라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다 정산 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8) 2014.12.23. 신설

라 근속연수 계산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마 적용사례

①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 2018.01.29.)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②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2017.12.22)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계사등에 전출한 뒤 2016.2.17.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종전 우리부 질의사례(소득세제과-208, 2016.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직시 현실적 퇴직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정산 합산과세 가능여부** (법령해석과-4252, 2016.12.27.)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④ **간접 출자 법인으로의 전출** (법규소득2014-250, 2014.08.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을 하는 것임

* 전출회사 근무중에 중간정산하였으나 전출시에는 퇴직급여 미수령 사례

⑤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기관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

(원천세과-433, 2009.05.21.)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과 연금취급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먼저 지급하는 기관에서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금액이 변경되어 수정하는 경우에도 각 해당 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⑥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다 자격상실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 (서이46013-11333, 2002.07.10)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하는 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는 2001. 12. 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하는 것임.

7 퇴직소득 원천징수

가 원칙 (소법 §127, §128)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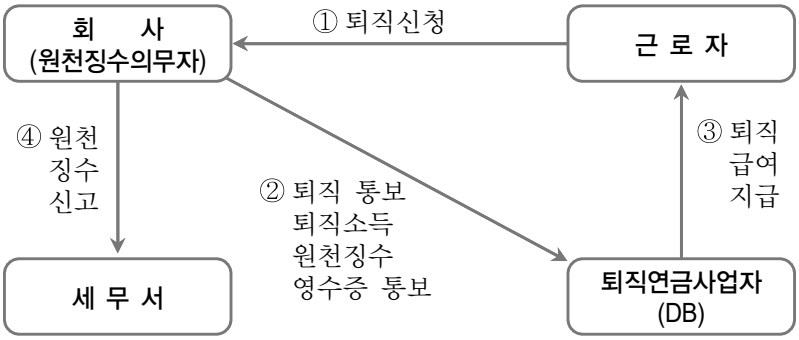

2) 확정기여형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함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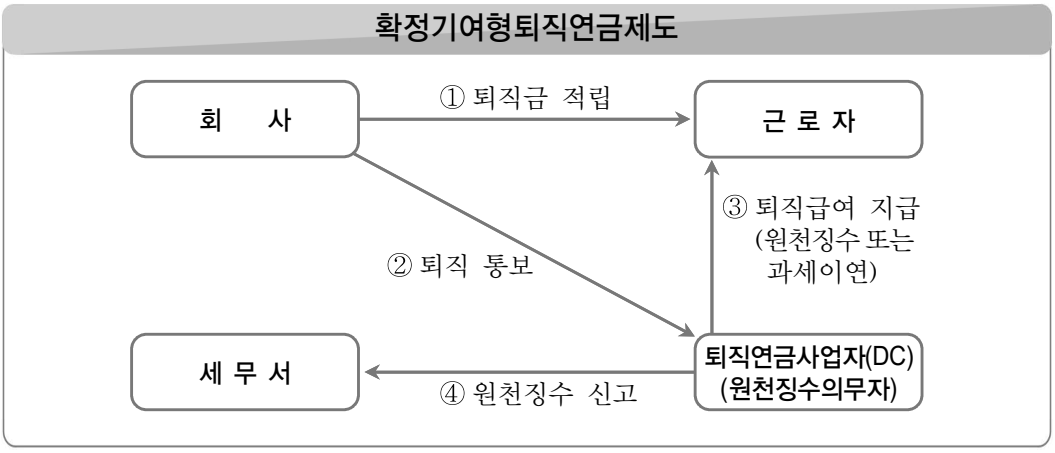

나 원천징수 제외 등

1) 원천징수 제외 (소법 §127①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한다.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2) 원천징수 이연 (소법 §146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소법 §146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2)]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시기 이연(소법 §146②)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경우(서이46013-11384, 2003.07.24.)**

공무원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차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에서 차감한 후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www.nts.go.kr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 공적연금사업자3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임원 여부 [ ]여 [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 퇴직금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타	

퇴직급여현황	근무처구분	중간지급 등	최 종	정 산
	⑬ 근무처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퇴직급여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⑮-⑯)			

근속연수	구 분		⑱ 입사일	⑲ 기산일	⑳ 퇴사일	㉑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안분	2012.12.31.이전									
		2013.1.1.이후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 산 내 용	금 액
개정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㉗ 퇴직소득(⑰)	
		㉘ 근속연수공제	
		㉙ 환산급여[(㉗-㉘)× 12배/정산근속연수]	
		㉚ 환산급여별공제	
		㉛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㉜ 환산산출세액(㉛× 세율)	
		㉝ 산출세액(㉜× 정산근속연수/12배)	

		계 산 내 용	금 액		
종전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㉞ 퇴직소득(⑰)			
		㉟ 퇴직소득정률공제			
		㊱ 근속연수공제			
		㊲ 퇴직소득과세표준(㉞-㉟-㊱)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 계
		㊳ 과세표준안분(㊲×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㊴ 연평균과세표준(㊳/각근속연수)			
		㊵ 환산과세표준(㊴× 5배)			
		㊶ 환산산출세액(㊵× 세율)			
		㊷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 ㊴ × 세율, 13.1.1.이후 : ㊶/5배)			
		㊸ 산출세액(㊷× 각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계산	㊹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㊺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㉝ × 퇴직연도별 비율) + [㊸ × (100% - 퇴직연도별 비율)]	
	㊻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㊼ 신고대상세액(㊺-㊻)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	㊽ 신고대상세액 (㊼)	연금계좌 입금명세					㊿ 퇴직급여 (⑰)	(51) 이연 퇴직소득세 (㊽×㊾/㊿)
		연금계좌 취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㊾ 계좌 입금금액		
		(52) 합 계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53) 신고대상세액(㊼)				
	(54) 이연퇴직소득세(51)				
	(55) 차감원천징수세액(53-54)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라 원천징수시기

① 원칙 : 퇴직소득 지급시(소법 §127)

② 특례 :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소법 §147)

㉮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시기 특례 배제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재판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시에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및 이자액 발생분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원천세과-1051, 2009.12.2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90, 2011.0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 위임 (소령 §184의 3)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사용자(회사)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② 연금계좌취급자

또한,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 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바 가산세 등

① **사용자의 부도폐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 (서면법규과-145, 2013.02.08.)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②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통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 2008.07.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통보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③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재조세-1540, 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8 지급명세서 제출

가 원칙 (소법 §164)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외 (법령 §44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9]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

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9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가 신고 대상자(소법 §7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146조~제148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원천세과-1051, 2009.12.23.)**
>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거주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나 신고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73①).

①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여(소법 §148①)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

다 제출서류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의2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17.3.10.> (앞쪽)

관리번호 -

(년 귀속)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⑳ 수정신고 ㉚ 경정청구 ㊵ 기한후신고		⑤ 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⑥ 은행명	⑦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	⑧ 성 명	⑨ 전화번호	⑩ 대리구분 ③ 신고
	⑪관리번호 -	⑫ 조정반번호 -	

❹ 퇴직소득명세

⑬ 지급처명 /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입사일 / ⑯ 퇴사일	⑰ 지 급 일 / ⑱ 근속월수	⑲ 퇴직급여	⑳ 비과세 퇴직급여	㉑ 과세대상 퇴직급여
합 계					

❺ 근속연수 계산

㉒ 제외월수	㉓ 가산월수	㉔ 중복월수	㉕ 정산근속연수	㉖ 2012.12.31.이전 근속연수	㉗ 2013.1.1.이후 근속연수(㉕-㉖)

❻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 산 내 용		퇴직소득세 금 액				지방소득세 금 액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㉑)	㉘								
		근속연수공제	㉙								
		환산급여 [(㉘ - ㉙) × 12배/정산근속연수]	㉚								
		환산급여별공제	㉛								
		퇴직소득과세표준(㉚-㉛)	㉜				㊶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금 액			
		환산산출세액(㉜ × 세율)	㉝				㊷				
		산출세액(㉝ × 정산근속연수/12배)	㉞				㊸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금 액			
		퇴직소득(㉑)	㉟								
		퇴직소득정률공제	㊱								
		근속연수공제	㊲								
		퇴직소득과세표준(㉟-㊱-㊲)	㊳				㊹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합계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합계
		과세표준안분(㊳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㊴				㊺			
		연평균과세표준(㊴/각근속연수)	㊵				㊻			
		환산과세표준(㊵ × 5배)	㊶				㊼			
		환산산출세액(㊶ × 세율)	㊷				㊽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 ㊵ × 세율, 13.1.1.이후 : ㊷/5배)	㊸				㊾			
		산출세액(㊸ × 각 근속연수)	㊹				㊿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㊺				(71)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㉞ × 퇴직연도별 비율)+[㊹ × (100% - 퇴직연도별 비율)]	㊻				(72)			
		가산세	㊼				(73)			
		기납부 세액	㊽				(74)			
차 감		납부(환급)할 총세액(㊻+㊼-㊽)	㊾				(75)			
		분납할 세액(2월내)	㊿				(76)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㊾-㊿)	(51)				(77)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1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 일 자 인

※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0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및 계산 사례

국세청 www.nts.go.kr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2016년~2019년 적용)

종전 규정 방식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	현행 규정 방식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	↓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2012년 이전분 (근속연수로 안분) / 2013년 이후분 (근속연수로 안분)	환산급여공제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과세표준 × 5 ÷ 근속연수) × 세율 ÷ 5 × 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
↓	↓
퇴직소득산출세액 ①	퇴직소득산출세액 ②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① × 20%) + (퇴직소득산출세액 ② × 80%)

-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 현행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차감원천징수세액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2020년부터 적용)

현행 규정 방식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차감원천징수세액

〈종전방식과 현행방식 세액계산 구조 비교〉

종전 규정 방식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40%)**

과세기간	11년~15년	06년~10년	02년~05년
공제율	40%	45%	50%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 + ㉯)**

*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안분
㉮ 2012년 이전분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2013년 이후분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세율 ÷ 5 × 근속연수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원

현행 규정 방식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정률공제(40%) 폐지

⊙ **환산급여(㉰)**
= (㉮ - ㉯)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35%

⊙ **퇴직소득산출세액(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① × 적용비율) + (② × 적용비율)
① 종전규정(2015년) 방식 산출세액
② 현행규정(2016년) 방식 산출세액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가 중간지급을 합산하는 경우 (2019년 퇴직 - 세액이연 없음)

>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01.01 입사하였고 2019.03.28 퇴사하였음.
>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 중간 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45,000,000원임.

〈계산내역〉

① 종전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8,524,875

퇴직소득금액	183,000,000	= (138,000,000 + 45,000,000)
(-) 퇴직소득공제	82,000,000	
정률공제	73,200,000	= 183,000,000 × 40%
근속연수공제	8,800,000	= 400만원 + 80만원(16년 - 1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101,000,000	

	2012년 이전 근무	2013년 이후 근무	합 계
과세표준 안분	56,812,500 (101,000,000×9/16)	44,187,500 (101,000,000-56,812,500)	101,000,000
(÷) 근속연수	9년	7년	
(=) 연평균과세표준	6,312,500		
(=)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31,562,500	
(×) 세율	6%	15%	
(=) 연평균산출세액	378,750	3,654,375	
(×) 근속연수	9년		
÷ 5 × 근속연수		÷ 5 × 7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3,408,750	5,116,125	8,524,875

② 현행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10,690,400

퇴직소득금액	183,000,000	= (138,000,000 + 45,000,000)
(-) 퇴직소득공제	8,800,000	
근속연수공제	8,800,000	= 400만원 + 80만원(16년 - 10년)
(=) 환산급여	130,650,000	= (183,000,000-8,800,000) ÷ 16년 × 12
(-) 환산급여공제	75,492,500	= 61,700,000 + (130,650,000-100,000,000) ×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55,157,500	
(×) 세율	24%	
(=) 환산산출세액	8,017,800	
÷ 12 × 근속연수	÷ 12 × 16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10,690,400	

③ 차감원천징수세액 : 6,237,295원

특례적용산출세액*	10,257,295	(①8,524,875 × 20%) + (②10,690,400 × 80%)
(-) 기납부세액	4,020,000	
(=) 차감납부세액	6,237,295	
(-) 이연퇴직소득세	0	
(=) 차감원천징수세액	6,237,295	

* (2019년 특례적용 산출세액 비율) 종전 : 개정 = 20% : 80%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 공적연금사업자3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명(상호) ㈜국세	③ 대표자(성명)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 ○○ ○○	
소득자	⑥ 성 명 홍길동	⑦ 주민등록번호 ******-*******	
	⑧ 주 소 ** ** **		⑨ 임원 여부 [ ]여 [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 퇴직금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타	

퇴직급여현황	근무처구분	중간지급 등	최 종	정 산
	⑬ 근무처명	(주) 국세	㈜국세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퇴직급여	138,000,000	45,000,000	183,000,000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⑮-⑯)	138,000,000	45,000,000	183,000,000

근속연수	구 분		⑱ 입사일	⑲ 기산일	⑳ 퇴사일	㉑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2004-01-01	2004-01-01	2010-06-30		78				7
	최종 근속연수			2010-07-01	2019-03-28		105				9
	정산 근속연수			2004-01-01	2019-03-28		183				16
	안분	2012.12.31.이전	2004-01-01	2004-01-01	2012-12-31		108				9
		2013.1.1.이후	2013-01-01	2013-01-01	2019-03-28		75				7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과세표준계산	㉗ 퇴직소득(⑰)	183,000,000
		㉘ 근속연수공제	8,800,000
		㉙ 환산급여[(㉗-㉘)× 12배/정산근속연수]	130,650,000
		㉚ 환산급여별공제	75,492,500
		㉛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55,157,500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㉜ 환산산출세액(㉛× 세율)	8,017,800
		㉝ 산출세액(㉜× 정산근속연수/12배)	10,690,400

종전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과세표준계산	㉞ 퇴직소득(⑰)	183,000,000		
		㉟ 퇴직소득정률공제	73,200,000		
		㊱ 근속연수공제	8,800,000		
		㊲ 퇴직소득과세표준(㉞-㉟-㊱)	101,000,000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 계
		㊳ 과세표준안분(㊲×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56,812,500	44,187,500	101,000,000
		㊴ 연평균과세표준(㊳/각근속연수)	6,312,500	6,312,500	6,312,500
		㊵ 환산과세표준(㊴× 5배)		31,562,500	31,562,500
		㊶ 환산산출세액(㊵× 세율)		3,654,375	3,654,375
		㊷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 ㊴ × 세율, 13.1.1.이후 : ㊶/5배)	378,750	730,875	1,109,625
		㊸ 산출세액(㊷× 각 근속연수)	3,408,750	5,116,125	8,524,875

퇴직소득세액계산		
	㊹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9
	㊺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㉝ × 퇴직연도별 비율) + [㊸ × (100% - 퇴직연도별 비율)]	10,257,295
	㊻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4,020,000
	㊼ 신고대상세액(㊺-㊻)	6,237,295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	㊽ 신고대상세액 (㊼)	연금계좌 입금명세					㊿ 퇴직급여 (⑰)	㉑ 이연 퇴직소득세 (㊽×㊾/㊿)
		연금계좌 취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㊾ 계좌 입금금액		
		㉒ 합 계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㉓ 신고대상세액(㊼)	6,237,295	623,729		6,861,024
	㉔ 이연퇴직소득세(㉑)				
	㉕ 차감원천징수세액(㉓-㉔)	6,237,290	623,720		6,861,010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9년 3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19년 4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주)국세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부)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1	45,000,000	6,237,290					
		가감계		A20	1	45,000,000	6,237,290				6,237,29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45,000,000	6,237,290				6,237,290	

❷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합병 등				

나 중간지급을 합산하는 경우 (2019년 퇴직 - 세액이연 있음)

>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01.01 입사하였고 2019.03.28 퇴사하였음.
>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 중간 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45,000,000원은 **전액 2019.04.01. IRP계좌로 이체하였음.**

〈계산내역〉

① 종전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8,524,875

퇴직소득금액	183,000,000	= (138,000,000 + 45,000,000)
(-) 퇴직소득공제	82,000,000	
정률공제	73,200,000	= 183,000,000 × 40%
근속연수공제	8,800,000	= 400만원 + 80만원(16년 - 1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101,000,000	

	2012년 이전 근무	2013년 이후 근무	합 계
과세표준 안분	56,812,500 (101,000,000×9/16)	44,187,500 (101,000,000-56,812,500)	101,000,000
(÷) 근속연수	9년	7년	
(=) 연평균과세표준	6,312,500		
(=)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31,562,500	
(×) 세율	6%	15%	
(=) 연평균산출세액	378,750	3,654,375	
(×) 근속연수	9년		
÷ 5 × 근속연수		÷ 5 × 7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3,408,750	5,116,125	8,524,875

② 현행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10,690,400

퇴직소득금액	183,000,000	= (138,000,000 + 45,000,000)
(-) 퇴직소득공제	8,800,000	
근속연수공제	8,800,000	= 400만원 + 80만원(16년 - 10년)
(=) 환산급여	130,650,000	= (183,000,000-8,800,000) ÷ 16년 × 12
(-) 환산급여공제	75,492,500	= 61,700,000 + (130,650,000-100,000,000) ×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55,157,500	
(×) 세율	24%	
(=) 환산산출세액	8,017,800	
÷ 12 × 근속연수	÷ 12 × 16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10,690,400	

③ 차감원천징수세액 : 0원

특례적용산출세액*	10,257,295	(①8,524,875 × 20%) + (②10,690,400 × 80%)
(-) 기납부세액	4,020,000	
(=) 차감납부세액	6,237,295	
(-) 이연퇴직소득세	6,237,295	= 6,237,295 × (45,000,000 ÷ 45,000,000)
(=) 차감원천징수세액	0	

* (2019년 특례적용 산출세액 비율) 종전 : 개정 = 20% : 80%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 공적연금사업자3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명(상호) ㈜국세	③ 대표자(성명)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 ○○ ○○	
소득자	⑥ 성 명 홍길동	⑦ 주민등록번호 ******-*******	
	⑧ 주 소 ** ** **		⑨ 임원 여부 [ ]여 [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 퇴직금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타	

퇴직급여현황	근무처구분	중간지급 등	최 종	정 산
	⑬ 근무처명	(주) 국세	㈜국세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퇴직급여	138,000,000	45,000,000	183,000,000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⑮-⑯)	138,000,000	45,000,000	183,000,000

근속연수	구 분		⑱ 입사일	⑲ 기산일	⑳ 퇴사일	㉑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2004-01-01	2004-01-01	2010-06-30		78				7
	최종 근속연수			2010-07-01	2019-03-28		105				9
	정산 근속연수			2004-01-01	2019-03-28		183				16
	안분	2012.12.31.이전	2004-01-01	2004-01-01	2012-12-31		108				9
		2013.1.1.이후	2013-01-01	2013-01-01	2019-03-28		75				7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과세표준계산	㉗ 퇴직소득(⑰)	183,000,000
		㉘ 근속연수공제	8,800,000
		㉙ 환산급여[(㉗-㉘)× 12배/정산근속연수]	130,650,000
		㉚ 환산급여별공제	75,492,500
		㉛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55,157,500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㉜ 환산산출세액(㉛× 세율)	8,017,800
		㉝ 산출세액(㉜× 정산근속연수/12배)	10,690,400

종전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과세표준계산	㉞ 퇴직소득(⑰)	183,000,000		
		㉟ 퇴직소득정률공제	73,200,000		
		㊱ 근속연수공제	8,800,000		
		㊲ 퇴직소득과세표준(㉞-㉟-㊱)	101,000,000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 계
		㊳ 과세표준안분(㊲×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56,812,500	44,187,500	101,000,000
		㊴ 연평균과세표준(㊳/각근속연수)	6,312,500	6,312,500	6,312,500
		㊵ 환산과세표준(㊴× 5배)		31,562,500	31,562,500
		㊶ 환산산출세액(㊵× 세율)		3,654,375	3,654,375
		㊷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 ㊴ × 세율, 13.1.1.이후 : ㊶/5배)	378,750	730,875	1,109,625
		㊸ 산출세액(㊷× 각 근속연수)	3,408,750	5,116,125	8,524,875

퇴직소득세액계산		
	㊹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9
	㊺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㉝ × 퇴직연도별 비율) + [㊸ × (100% - 퇴직연도별 비율)]	10,257,295
	㊻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4,020,000
	㊼ 신고대상세액(㊺-㊻)	6,237,295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	㊽ 신고대상세액 (㊼)	연금계좌 입금명세					㊿ 퇴직급여 (⑰)	51 이연 퇴직소득세 (㊽×㊾/㊿)
		연금계좌 취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㊾ 계좌 입금금액		
		*****	***-**-*****	********	2019-04-01	45,000,000	45.000.000	6.237.295
		52 합 계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53 신고대상세액(㊼)	6,237,295	623,729		6,861,024
	54 이연퇴직소득세(51)	6,237,295	623,729		6,861,024
	55 차감원천징수세액(53-54)	0	0		0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9년 3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19년 4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주)국세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부)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1	45,000,000	0					
		가감계		A20	1	45,000,000	0				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45,000,000	0				0	

❷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합병 등				

다 중간지급을 합산하고 퇴직금 중 일부만 과세이연한 경우(2019년 퇴직)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01.01 입사하였고 2019.03.28 퇴사하였음.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 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45,000,000원 중 20,000,000원만 2019.04.01. IRP계좌로 이체.**

〈계산내역〉

① 종전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8,524,875

퇴직소득금액	183,000,000	= (138,000,000 + 45,000,000)
(-) 퇴직소득공제	82,000,000	
정률공제	73,200,000	= 183,000,000 × 40%
근속연수공제	8,800,000	= 400만원 + 80만원(16년 - 1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101,000,000	

	2012년 이전 근무	2013년 이후 근무	합 계
과세표준 안분	56,812,500 (101,000,000×9/16)	44,187,500 (101,000,000-56,812,500)	101,000,000
(÷) 근속연수	9년	7년	
(=) 연평균과세표준	6,312,500		
(=)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31,562,500	
(×) 세율	6%	15%	
(=) 연평균산출세액	378,750	3,654,375	
(×) 근속연수	9년		
÷ 5 × 근속연수		÷ 5 × 7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3,408,750	5,116,125	8,524,875

② 현행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10,690,400

퇴직소득금액	183,000,000	= (138,000,000 + 45,000,000)
(-) 퇴직소득공제	8,800,000	
근속연수공제	8,800,000	= 400만원 + 80만원(16년 - 10년)
(=) 환산급여	130,650,000	= (183,000,000-8,800,000) ÷ 16년 × 12
(-) 환산급여공제	75,492,500	= 61,700,000 + (130,650,000-100,000,000) ×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55,157,500	
(×) 세율	24%	
(=) 환산산출세액	8,017,800	
÷ 12 × 근속연수	÷ 12 × 16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10,690,400	

③ 차감원천징수세액 : 3,465,160원

특례적용산출세액*	10,257,295 (①8,524,875 × 20%) + (②10,690,400 × 80%)	
(-) 기납부세액	4,020,000	
(=) 차감납부세액	6,237,295	
(-) 이연퇴직소득세	2,772,131	= 6,237,295 × (20,000,000 ÷ 45,000,000)
(=) 차감원천징수세액	3,465,160	

* (2019년 특례적용 산출세액 비율) 종전 : 개정 = 20% : 80%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 공적연금사업자3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명(상호) ㈜국세	③ 대표자(성명)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 ○○ ○○	
소득자	⑥ 성 명 홍길동	⑦ 주민등록번호 ******-*******	
	⑧ 주 소 ** ** **		⑨ 임원 여부 [ ]여 [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 퇴직금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타

퇴직급여현황	근무처구분	중간지급 등	최 종	정 산
	⑬ 근무처명	(주) 국세	㈜국세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퇴직급여	138,000,000	45,000,000	183,000,000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⑮-⑯)	138,000,000	45,000,000	183,000,000

근속연수	구 분		⑱ 입사일	⑲ 기산일	⑳ 퇴사일	㉑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2004-01-01	2004-01-01	2010-06-30		78				7
	최종 근속연수			2010-07-01	2019-03-28		105				9
	정산 근속연수			2004-01-01	2019-03-28		183				16
	안분	2012.12.31.이전	2004-01-01	2004-01-01	2012-12-31		108				9
		2013.1.1.이후	2013-01-01	2013-01-01	2019-03-28		75				7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 산 내 용	금 액
개정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계산	㉗ 퇴직소득(⑰)	183,000,000
		㉘ 근속연수공제	8,800,000
		㉙ 환산급여[(㉗-㉘)× 12배/정산근속연수]	130,650,000
		㉚ 환산급여별공제	75,492,500
		㉛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55,157,500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㉜ 환산산출세액(㉛× 세율)	8,017,800
		㉝ 산출세액(㉜× 정산근속연수/12배)	10,690,400

		계 산 내 용	금 액		
종전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계산	㉞ 퇴직소득(⑰)	183,000,000		
		㉟ 퇴직소득정률공제	73,200,000		
		㊱ 근속연수공제	8,800,000		
		㊲ 퇴직소득과세표준(㉞-㉟-㊱)	101,000,000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 계
		㊳ 과세표준안분(㊲×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56,812,500	44,187,500	101,000,000
		㊴ 연평균과세표준(㊳/각근속연수)	6,312,500	6,312,500	6,312,500
		㊵ 환산과세표준(㊴× 5배)		31,562,500	31,562,500
		㊶ 환산산출세액(㊵× 세율)		3,654,375	3,654,375
		㊷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 ㊴ × 세율, 13.1.1.이후 : ㊶/5배)	378,750	730,875	1,109,625
		㊸ 산출세액(㊷× 각 근속연수)	3,408,750	5,116,125	8,524,875

퇴직소득세액계산	㊹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9
	㊺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㉝ × 퇴직연도별 비율) + [㊸ × (100% - 퇴직연도별 비율)]	10,257,295
	㊻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4,020,000
	㊼ 신고대상세액(㊺-㊻)	6,237,295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	㊽ 신고대상세액 (㊼)	연금계좌 입금명세					㊿ 퇴직급여 (⑰)	51 이연 퇴직소득세 (㊽×㊾/㊿)
		연금계좌 취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㊾ 계좌 입금금액		
		*****	***-**-*****	********	2019-04-01	20,000,000	45.000.000	2,772,131
		52 합 계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53 신고대상세액(㊼)	6,237,295	623,729		6,861,024
	54 이연퇴직소득세(51)	2,772,131	277,213		3,049,344
	55 차감원천징수세액(53-54)	3,465,160	346,510		3,811,670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9년 3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19년 4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주)국세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부)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1	45,000,000	3,465,160					
		가감계		A20	1	45,000,000	3,465,160				3,465,16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45,000,000	3,465,160				3,465,160	

❷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합병 등				

11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사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프로그램 내려받기

① 국세청홈페이지(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nts.go.kr를 입력)에서 왼쪽 상단의 배너에서 국세정보 하위메뉴 국세청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②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게시물을 클릭합니다.

③ 첨부파일을 클릭한 후 하단에서 저장을 선택한 후 원하는 경로에 저장합니다.

나 퇴직소득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세액계산

세액계산프로그램에는 '화면설명', '기본사항 등 입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지)프로그램수정사항' 4개 시트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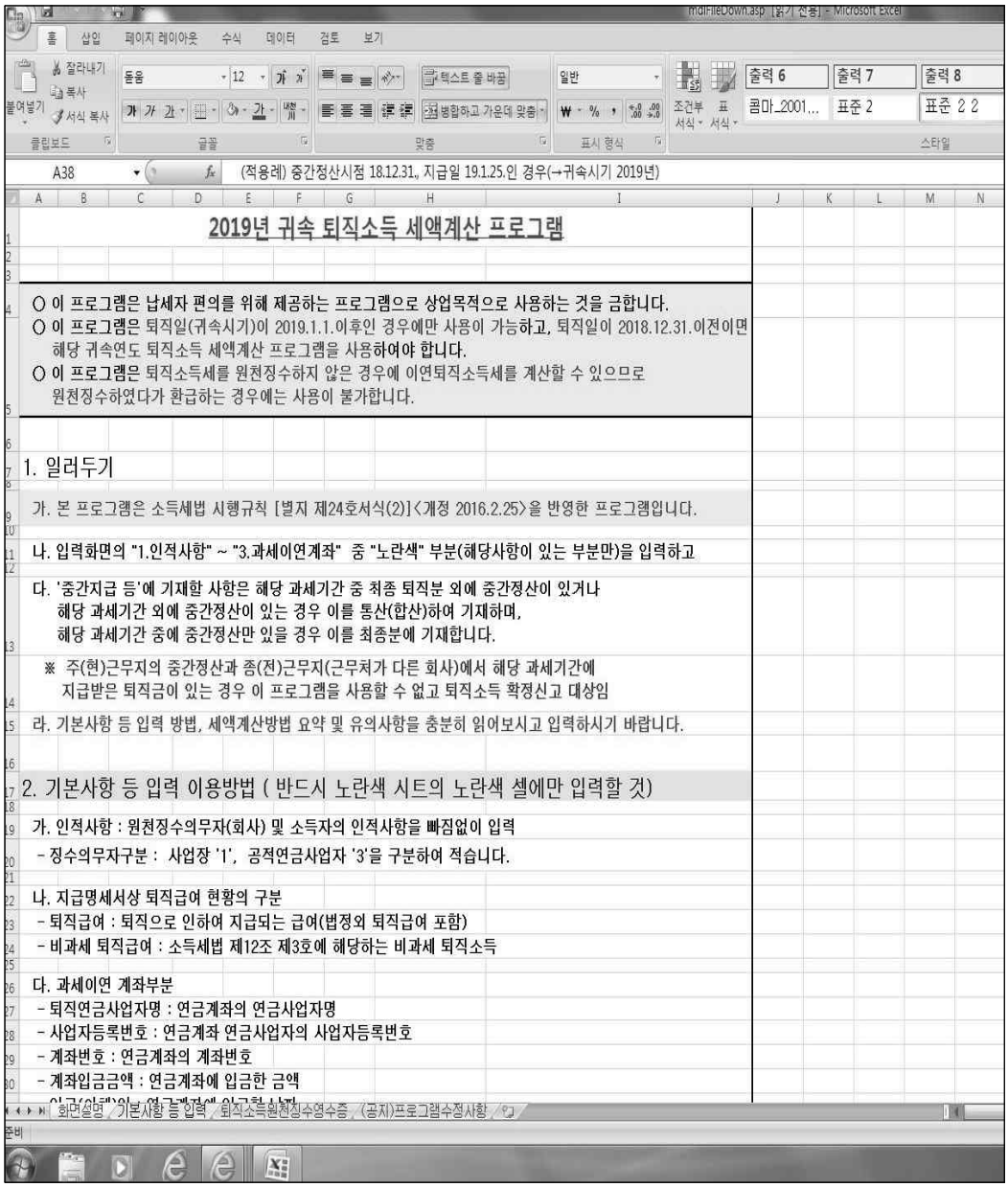

※ 화면실행시 다음과 같은 보안경고가 보이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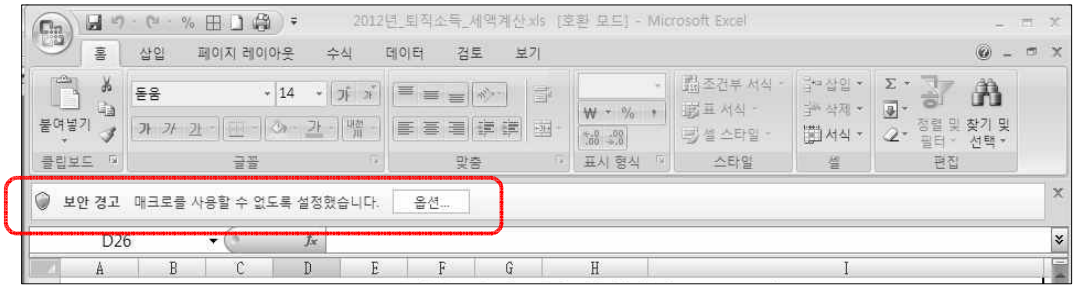

- 옵션을 선택하여 팝업메뉴에서 “이 콘텐츠 사용(E)"를 선택한 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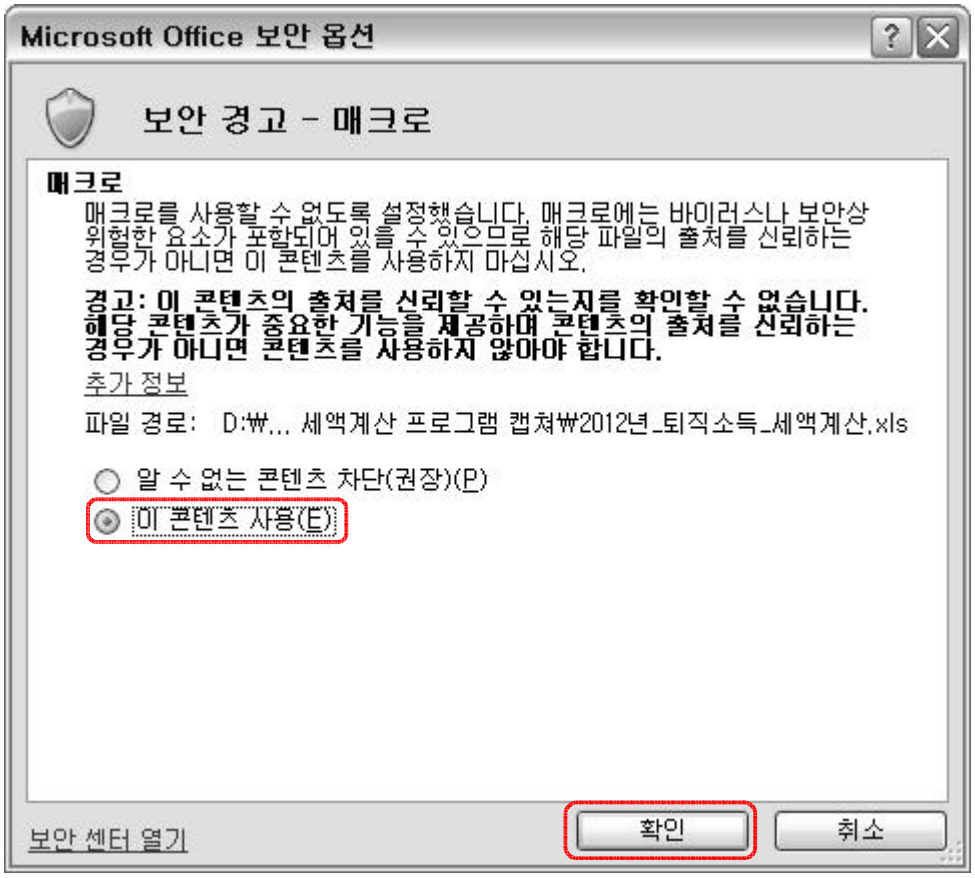

① 화면설명 내용

2019년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퇴직일(귀속시기)이 2019.1.1.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일이 2018.12.31.이전이면 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하였다가 환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1. 일러두기

가. 본 프로그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개정 2016.2.25〉을 반영한 프로그램입니다.

나. 입력화면의 "1.인적사항" ~ "3.과세이연계좌" 중 "노란색" 부분(해당사항이 있는 부분만)을 입력하고

다. '중간지급 등'에 기재할 사항은 해당 과세기간 중 최종 퇴직분 외에 중간정산이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외에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이를 통산(합산)하여 기재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중간정산만 있을 경우 이를 최종분에 기재합니다.

※ 주(현)근무지의 중간정산과 종(전)근무지(근무처가 다른 회사)에서 해당 과세기간에지급받은 퇴직금이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고 퇴직소득 확정신고 대상임

라. 기본사항 등 입력 방법, 세액계산방법 요약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기본사항 등 입력 이용방법(반드시 노란색 시트의 노란색 셀에만 입력할 것)

가. 인적사항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징수의무자구분 : 사업장 '1', 공적연금사업자 '3'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지급명세서상 퇴직급여 현황의 구분
- 퇴직급여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급여(법정외 퇴직급여 포함)
- 비과세 퇴직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퇴직소득

다. 과세이연 계좌부분

- 퇴직연금사업자명 : 연금계좌의 연금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금계좌 연금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연금계좌의 계좌번호
- 계좌입금금액 :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 입금(이체)일 :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짜

3. 세액계산방법 요약 및 유의사항

* 중간지급 등 : 최종 퇴직분 외의 중간 지급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최종분 : 최종 퇴직분에 대한 내용 기재(※ 당해년도에 중간정산분만 있을 경우에는 최종분으로 기재)

· 중간정산 지급일 = 퇴사일 = 퇴직소득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적용례) 중간정산시점 18.12.31., 지급일 19.1.25.인 경우(→귀속시기 2019년)
→ 퇴사일 2019.1.25.입력, 근속연수 계산시 중간정산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월수에 1월(19.1.1.~19.1.25.) 기재
→ 추후 최종 퇴직분 퇴직급여 근속년수 산정 시 근속년수에 가산월수 1월(19.1.1.~19.1.25.) 기재

* 정산(합산) : 중간지급분과 최종분의 정산(합산)내용 기재

가.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① 법정외 퇴직금의 구분 없음

-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법정외 퇴직금의 구분이 없어져서 별도의 퇴직소득공제 없음
  → 이전에는 법정외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 공제하였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중간지급일 이후부터 기산함
  (적용례) 퇴직금 10,000,000원, 명예퇴직금 5,000,000원일 경우, 중간지급일 이후 근속연수 5년, 최초입사일 이후 근속연수 10년이면
  →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 5년으로 하여 1,500,000원 공제함

② 2013.1.1.이후분에 대하여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를 하여(환산과세표준) 세율 적용

- 연평균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에 5배를 하여 환산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5로 나눔

③ 산출세액

- 2012.12.31. 이전분 : 연평균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연평균산출세액 계산
- 2013. 1. 1. 이후분 : 연평균과세표준의 5배수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5로 나눠 연평균산출세액 계산
- 각 퇴직소득의 연평균산출세액에 각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여 산출세액계산

나.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① 퇴직소득 과세방식 변경
- 정률공제(퇴직소득의 40%를 일률적으로 공제) → 차등공제(환산급여구간별로 차등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②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③ 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④ 세액계산 특례

< 적용비율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년 이전 방식	80%	60%	40%	20%
2016년 이후 방식	20%	40%	60%	80%

- (2015년 이전 계산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적용비율) + (2016년 이후 계산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적용비율)

다.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 신고대상세액 ×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최종분 퇴직급여)

② '기본사항 등 입력'시트에서 〈1.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활한 퇴직소득세 신고 업무를 돕기 위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하에 퇴직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1.인적사항

입력사항	징수의무자	근무처구분	최종(퇴직)	중간지급 등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01-81-12345
		법인명(상호)	㈜국세	㈜국세
		대표자(성명)	가나다	
		주민(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7	
		소재지(주소)	세종시 국세청로 0-00	
		징수의무자구분	사업장1	
		관할세무서	0	
	소 득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원여부(여/부)		
		주소		

③ 〈2. 퇴직금 지급(영수)내역〉을 입력합니다.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입력시에는 yyyy-mm-dd형식(2000-01-01)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2.퇴직금 지급(영수)내역

※ 날짜 입력시 "yyyy-mm-dd" 의 형식으로 입력

근무처구분	입사일	기산일 ※필수입력	퇴사일 ※필수입력	지급일 ※필수입력	2012.12.31 이전 제외월수	2013.1.1이후 제외월수	2012.12.31 이전 가산월수	2013.1.1 이후 가산월수
최종	2004-01-01	2010-07-01	2019-03-28					
중간지급 등		2004-01-01	2010-06-30					

근무처구분	퇴직급여 ※필수입력	비과세 퇴직급여	기납부세액
최종	45,000,000		
중간지급 등	138,000,000		4,020,000

※ 중간정산 지급일 = 퇴사일 = 퇴직소득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 중간지급 등의 기산일과 퇴사일을 기재하면 반드시 퇴직급여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1 페이지

과세이연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과세이연계좌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입력 금지

*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과세이연계좌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입금금액	입금(이체)일
(1)	한국은행	101-86-12345	110-11-11111	45,000,000	2019-04-01
(2)					

④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시트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16.2.25.>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구분	사업장1

징수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②법인명(상호)	㈜국세	③대표자(성명) 가나다
	④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1234567	⑤소재지(주소)	세종시 국세청로 0-00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9) 임원여부
	(1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일				(11) 2011.12.31.퇴직금

귀속연도	부터	(12)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까지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퇴직급여현황	근무처구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13) 근무처명	㈜국세	㈜국세	
	(14)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01-81-12345	
	(15) 퇴직급여	138,000,000	45,000,000	183,000,000
	(16) 비과세 퇴직급여	-	-	-
	(17) 과세대상 퇴직급여(15-16)	138,000,000	45,000,000	183,000,000

근속연수	구 분		(18)입사일	(19)기산일	(20)퇴사일	(21)지급일	(22)근속월수	(23)제외월수	(24)가산월수	(25)중복월수	(26)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2004-01-01	2010-06-30		78	0	0		7
	최종 근속연수		2004-01-01	2010-07-01	2019-03-28		105	0	0		9
	정산 근속연수			2004-01-01	2019-03-28		183	0	0	0	16
	안분	2012.12.31.이전		2004-01-01	2012-12-31		108	0	0		9
		2013. 1. 1. 이후		2013-01-01	2019-03-28		75	0	0		7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과세표준 계산	(27)퇴직소득(17)	183,000,000
		(28)근속연수공제	8,800,000
		(29) 환산급여 [(27-28) × 12배 /정산근속연수]	130,650,000
		(30) 환산급여별공제	75,492,500
		(31) 퇴직소득과세표준(29-30)	55,157,500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32) 환산산출세액(31 × 세율)	8,017,800
		(33) 산출세액(32 × 정산근속연수 / 12배)	10,690,400

1 페이지

		계 산 내 용	금 액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표준 계산	(34)퇴직소득(17)			183,000,000
		(35)퇴직소득정률공제			73,200,000
		(36)근속연수공제			8,800,000
		(37) 퇴직소득과세표준(34-35-36)			101,000,000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합 계
		(38)과세표준안분 (37×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56,812,500	44,187,500	101,000,000
		(39)연평균과세표준(38/각근속연수)	6,312,500	6,312,500	6,312,500
		(40)환산과세표준(39×5배)		31,562,500	31,562,500
		(41)환산산출세액(40×세율)		3,654,375	3,654,375
		(42)연평균산출세액 (12.12.31. 이전 : (39)×세율, 13.1.1. 이후 : ((41)/5배)	378,750	730,875	1,109,625
		(43)산출세액(42×각 근속연수)	3,408,750	5,116,125	8,524,875
퇴직소득 세액계산		(44)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9		
		(45)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33×퇴직연도별비율) + [(43×(100% - 퇴직연도별비율)]			10,257,295
		(46)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4,020,000
		(47) 신고대상세액(45 - 46)			6,237,295

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	(48) 신고대상세액(47)	연금계좌 입금명세					(50) 퇴직급여(17)	(51) 이연 퇴직소득세 (48 × 49 / 50)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49)계좌입금금액		
	6,237,295	한국은행	101-86-12345	110-11-11111	2019-04-01	45,000,000	45,000,000	6,237,295
						-		
		(52) 합 계				45,000,000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53) 신고대상세액(47)	6,237,295	623,729		6,861,024
	(54) 이연퇴직소득세(51)	6,237,295	623,729		6,861,024
	(55) 차감원천징수세액(53-54)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12 퇴직소득 Q&A

Q

1. 당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DC형과 DB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이며, 신고서식 및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 DC형(확정기여형 연금제도) 퇴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자도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A21(퇴직소득 연금계좌)란에 기재하고 지급명세서는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퇴직란(㉘)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연금제도) 퇴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도 회사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A22(퇴직소득 그외)란에 기재하고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Q

2.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퇴직사유(⑫)란에 중간정산으로 체크하고, 퇴직급여현황란 최종분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간지급 등'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Q

3.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계산 할 경우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사람의 퇴사일은 1월 1일이 맞나요?

A

○ 세법상 퇴사일은 12월 31일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일자를 상기와 같이 안내하는 것은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이며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퇴직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4. 퇴직소득 중간정산기준일과 지급일이 다른 경우의 구체적인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은?

A

예시) 중간정산 기준일('18.12.31.)과 중간정산 지급일('19.8.31.)이 다른 경우 퇴사일 입력은?

퇴사일을 '19.8.31.로 입력하고 제외월수에 8개월을 입력, 추후 실제 퇴사시 ('19.11.1.) 기산일은 '19.9.1.로 입력하고 당초 제외월수인 8개월을 가산월수로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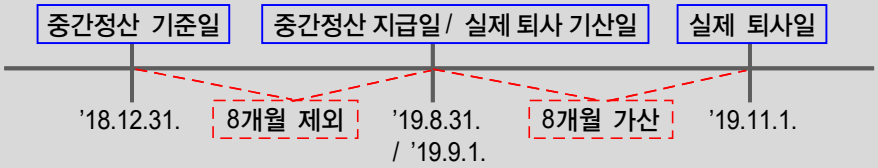

국세청
www.nts.go.kr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 공적연금사업자3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임원 여부 [ ]여 [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 퇴직금
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퇴직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⑬ 근무처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퇴직급여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⑮-⑯)			

중간정산 지급일

중간정산 기준일 ~
중간정산 지급일 기간 : 중간정산 퇴직급여 산정과 무관한 기간

근속연수	구 분		⑱ 입사일	⑲ 기산일	⑳ 퇴사일	㉑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2006-05-01	2019-08-31	2019-08-31	160	8			13
	최종 근속연수			2019-09-01	2019-11-01		3		8		1
	정산 근속연수			2006-05-01	2019-11-01		163	8	8	0	14
	안분	2012.12.31.이전		2006-05-01	2012-12-31		80				7
		2013.1.1.이후		2013-01-01	2018-11-01		83	8	8		7

Q

5. 퇴직일시금(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법정외퇴직금)의 지급기관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과 각 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 먼저 지급하는 기관에서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하는 기관에서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Q

6. '19년 7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17.12월 지급 100만원)과 최종('19.7월 지급 200만원)분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였을 경우, '19년 8월 원천세 신고시 총지급액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A

○ '19년 7월에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급여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의 퇴직소득 총지급액은 200만원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중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아니면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지요?

A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려면, 반드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먼저 해당하여야 하며, 이 사유 중 소득세법 상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을 동시에 만족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중간정산에 해당되므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Q

8. 근로자 A의 퇴직소득 중간정산시점이 '18.12.31이고 지급일이 '19.1.25인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에 대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됩니다.

- 따라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9년이 되며, 지급명세서는 '20.3.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

9. 근로자 B의 입사일이 '16.1.31.이고 퇴사일이 '17.1.31.인 경우 근속월수는 13개월로 계산되는데, 만약 입사일이 '16.2.29.이고 퇴사일이 '17.2.28.인 경우의 근속월수는 몇 개월인지?

A

○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에 따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 민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2016.2.29일부터 기산하여 민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1년이 되는 날은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만료일이므로 2017.2.28.이 되어 12개월이 됩니다.

제 3 장

연금소득 원천징수

연금소득 원천징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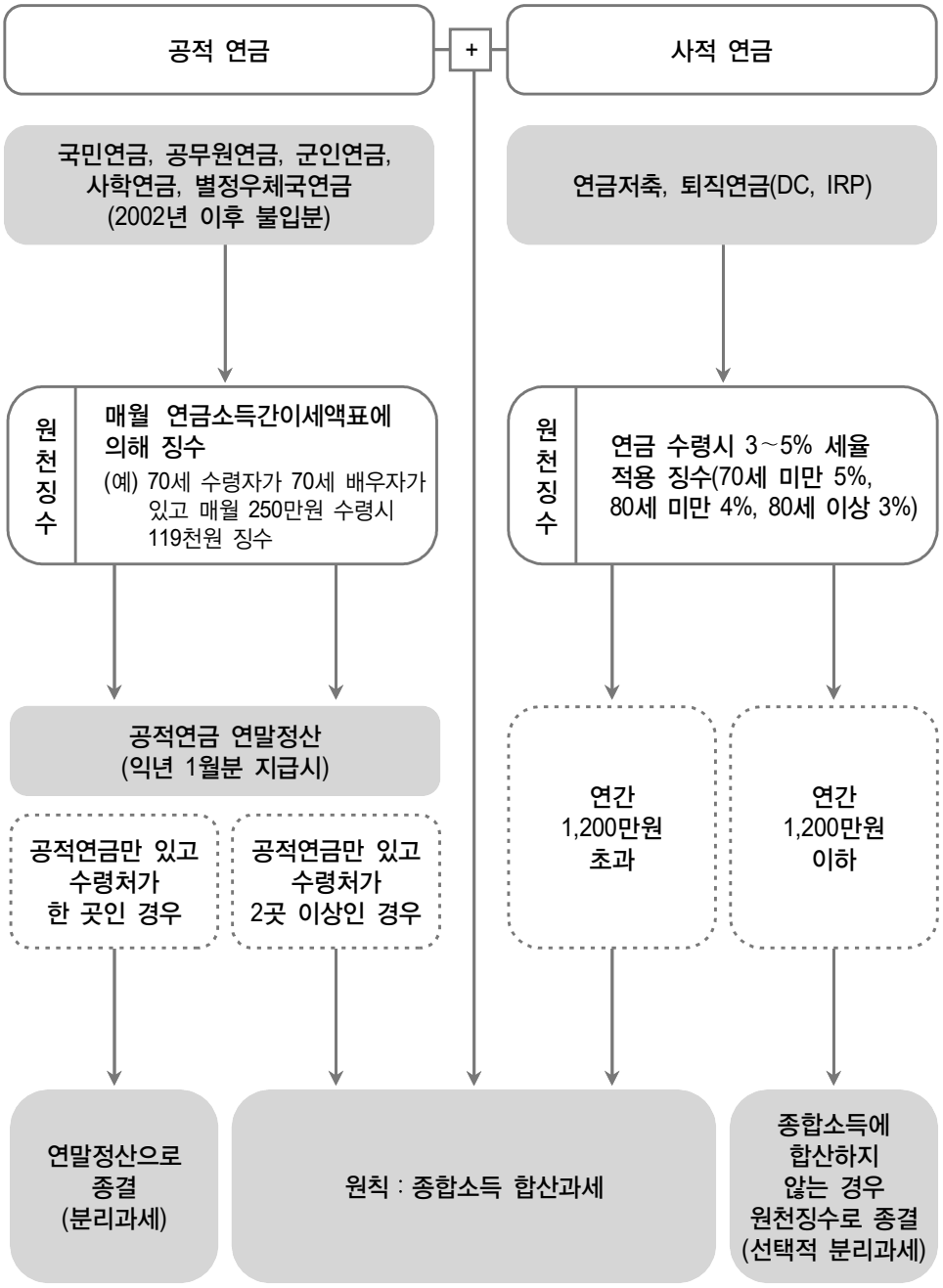
공적 연금
+
사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02년 이후 불입분)
연금저축, 퇴직연금(DC, IRP)
원천징수
매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
(예) 70세 수령자가 70세 배우자가 있고 매월 250만원 수령시 119천원 징수
원천징수
연금 수령시 3~5% 세율 적용 징수(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공적연금 연말정산 (익년 1월분 지급시)
공적연금만 있고 수령처가 한 곳인 경우
공적연금만 있고 수령처가 2곳 이상인 경우
연간 1,200만원 초과
연간 1,200만원 이하
연말정산으로 종결 (분리과세)
원칙 : 종합소득 합산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 (선택적 분리과세)

1 연금소득의 범위

국세청 www.nts.go.kr

* **연금소득의 범위**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

나.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 (소령 §40)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다음의 과세기준금액으로 한다.

①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10)]

$$\text{과세기간 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text{ 누계액}}{\text{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text{ 누계액}}$$

* 환산소득 :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11)]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소령 §40⑤).

---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계노령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1)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제1항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②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text{과세기간 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과세기준일 이후 연금수령액 기여금 납입월수}}{\text{총 기여금 납입월수}}$$

1) 재직기간 등 합산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공적연금 계산시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2)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공적연금소득 = 과세기준금액 − 과세제외기여금등

과세제외기여금등이란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으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한다.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3) 공적연금소득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나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다음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①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②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12)]
③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1) 적용사례

①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 과세여부(소득-521, 2014.09.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연금저축에 가입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받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소득 46073-130, 2002.9.26.)를 참조

③ 미국회사에서 받은 연금 등을 한국에서 송금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46011-566, 1999.12.31.)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 미국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23조에 의하여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동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12) 2013.12.31. 이전까지는 舊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2 연금계좌 종류 및 요건 등

가 연금계좌 종류 (소령 §40의2①)

1) 연금저축계좌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소득세법 부칙(11611호, 2013.1.1.)

제18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 연금계좌 의제 :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제19조(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연금소득 과세

소득세법 부칙(26067호, 2014.12.23.)

제23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 등의 계좌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의 계좌는 각각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2)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계좌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DC,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 9호)

②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I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 10호)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소득세법 부칙(11611호, 2013.1.1.)

제20조(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3년 이전에 납입한 자기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2013년 이후 불입한 자기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나 연금계좌 납입요건 (소령 §40의2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①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함)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가 만기가 되는 경우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혀용하여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도 가능하도록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 하였다(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②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6067호, 2015.2.3.) *

제7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5.2.3.)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한 날이 도래하거나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연금계좌의 납입한도 계산(서면법규과-1211, 2013.11.05.)**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연간 (순)납입한도 1,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 연금수령 요건 (소령 §40의2③)

1) 연금형태 인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적용 제외

③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사례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액이 5천만원, 연금수령연차는 6년차, 연간 연금수령액이 3천만원(의료비 인출 5백만원 포함)인 경우 연금외수령 금액은 얼마인가?

☞ ○ 연금수령한도 = { 5천만원 / (11 - 6) } × 120 / 100 = 12,000,000원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액(3천만원) - 의료비(5백만원) - 연금수령한도(1천2백만원)
= 13,000,000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6067호, 2015.2.3.)

제7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한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나) 연금수령연차 특례

다만, 구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 가입)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신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와의 형평을 위해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하며,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승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연금수령연차에 적용하는 기산연차의 예외〉

예외적인 사유	기산연차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년차
○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소법 §44②)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연혁

○ 부칙 24356호(2013.2.15.)
제7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금계좌의 인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25193호(2014.2.21.)
제8조(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인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26067호(2015.2.3.)
제7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한 날이 도래하거나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연금수령 절차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1, 2016.11.01.)**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3.13.>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❶ 연금계좌 취급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소재지(주소)

❷ 연금계좌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 내역

(1) 신청연월	년 월

(2) 연금수령 개시 내역

① 계좌 구분	② 신청 구분	가입자 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입일	③ 과세제외 금액	④ 과세대상 금액			⑤ 승계계좌 여부
							세액 공제분	이연퇴직 소득	운용 수익	

위의 연금계좌취급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연금계좌의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 처리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금계좌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취급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연금수령을 개시한 연금계좌와 해지한 연금계좌 내역을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②신청구분란에는 신청 사유를 각각 구분(연금개시 1, 연금개시 전 해지 2, 연금개시 후 해지 3)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라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소령 §20의2)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며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소법 §14③9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6067호, 2015.2.3.) *

제3조(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① 인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세액공제(소령 §118의5) 대상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다.

의료비 인출 증명서류는 의료비인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 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② 의료비연금계좌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여 인출할 수 있다.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은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소칙 §11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15.3.13.>

의료비인출신청서

①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② 의료비연금계좌	연금계좌 취급기관명		의료비연금계좌 지 정 일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의료비 지급명세

③ 의료기관 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지급일자	⑥ 인부담금액	⑦ 인출신청금액
	합 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인출을 위하여 의료비인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비지급명세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 성 방 법

1.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의료비인출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료비 영수일 기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인출 대상 의료비가 아닌 것이나,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의료비를 착오 또는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다.

① 천재・지변

②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③ 연금계좌 가입자의 해외이주

④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에 한하며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요양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아래 금액 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2015.2.3.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0만원

㉯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소령 §118의5 ①,②)

㉰ 연금계좌 가입자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 150만원

또한, 요양으로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의료비와 간병인 비용에 한함),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휴직 또는 휴업에 한함)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칙 §11의2).

⑤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연금계좌취급자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증빙서류 보관

연금계좌취급자는 1), 2)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연금계좌를 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출시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은 언제인지 (소득세과-1144, 2016.07.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마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 (舊 소령 §42, 2014.2.21. 삭제)

1)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

연금계좌 인출 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금수령액 중 연금소득 과세대상 소득이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시 무조건 분리과세하도록 개정되어 해당조항이 삭제되었다.

Min(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금액 중 1200만원 초과금액)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 분리과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어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신고 방법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로 인하여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거나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최소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세부담이 같거나 작아지게 된다.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기 전에 이미 연금수령시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준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연금외수령분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

사례

1. 연금계좌 평가금액 : 3,000만원(과세제외 200만원, 이연퇴직소득 1,500만원, 소득공제 1,300만원)
   -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는 50만원으로 가정
2. 연금계좌 수령금액 : 2,000만원(연금수령 1,500만원, 연금외수령 500만원으로 가정)
   - 인출순서 : 과세제외 200만원, 이연퇴직소득 1,5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
   - 원천징수 : 과세제외 200만원, 연금소득 1,300만원, 퇴직소득 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

연금계좌 인출금액 2000만원				
일 반	연금수령 1,500만원		연금외수령 500만원	
	200만원	1,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인출순서 (소령 §40의3)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소득공제
특 례	200만원	1,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연금수령 1,400만원		연금외수령 600만원	

3.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에 따라 연금수령에서 연금외수령으로 전환하는 금액
   - Min(1500만원, 1,300만원 - 1,200만원) = 100만원(연금외수령으로 전환)
4. 연금외수령으로 전환하는 금액 100만원은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여 분류과세로 종결, 연금외수령 100만원을 제외한 연금수령 1,200백만원은 분리과세로 종결

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소령 §40의3)

1) 일부 금액 인출

연금계좌에서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금액, 운용수익) 순서[가)→나)→다)]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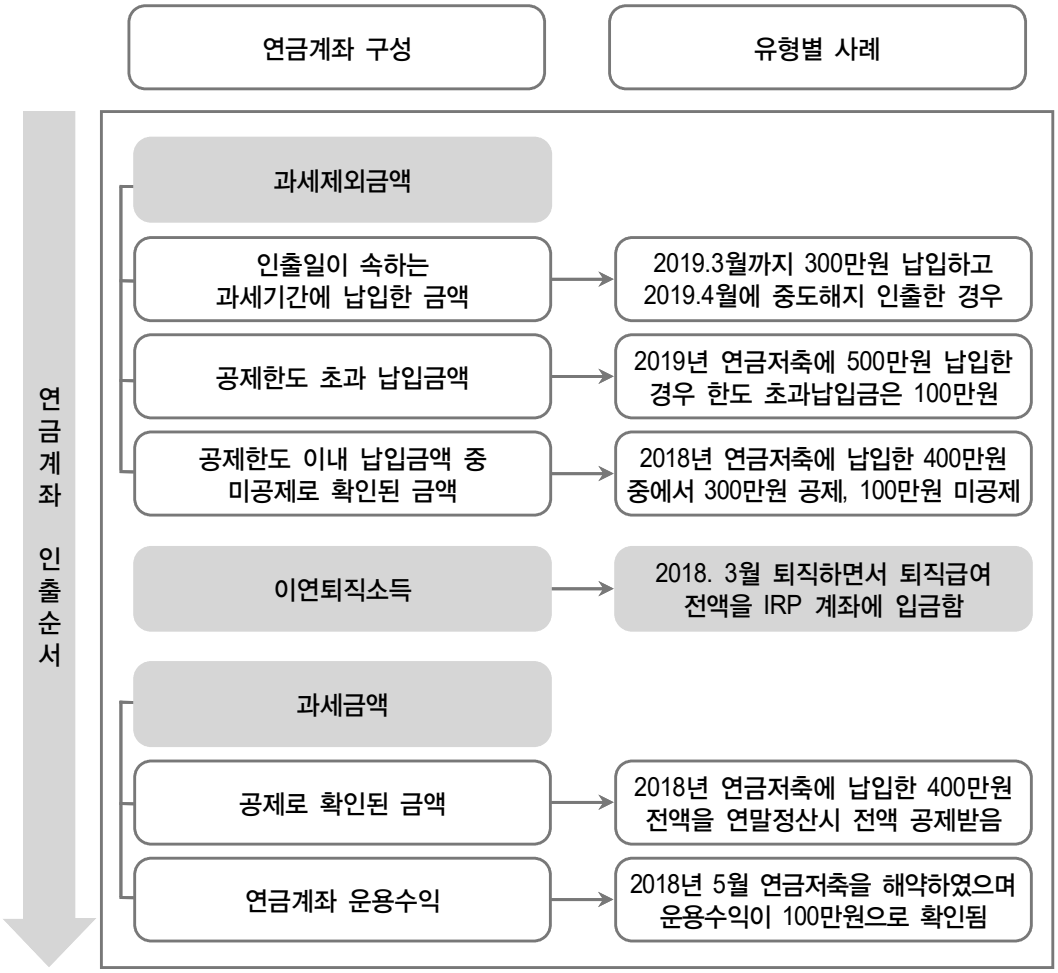

가) 과세제외금액

(1) 인출 순서

과세제외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①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②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③ ①~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다만, ③은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소령 §201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2)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소령 §201의 10)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가) 발급대상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③「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

연금소득자등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세제외금액 확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확인대상납입액(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으로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로 한정한다)는「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2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7829호, 2017.2.3.) *

제1조(시행일)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자(법령해석과-324, 2016.02.02.)**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례

◎ 홍길동씨의 연금계좌 확인대상 납입액이 아래와 같을 때 B은행 연금계좌를 먼저 해지할 경우 과세제외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구 분	소득 · 세액공제	A은행	B은행	과세제외
사례1	3,000,000	3,000,000	5,000,000	5,000,000
사례2	4,000,000	5,000,000	4,000,000	4,000,000
사례3	4,000,000	3,000,000	3,000,000	2,000,000

☞ ○ <사례1> 과세제외금액 : Min(800만원 - 300만원, 500만원) = 500만원
○ <사례2> 과세제외금액 : Min(9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400만원
○ <사례3> 과세제외금액 : Min(600만원 - 400만원, 300만원) = 200만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14.3.14>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소 득 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1. 과세기간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명세

④ 확인 기간	2001. 1. 1. ~ . . .

과세연도	공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액	소상공인 소득공제액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득·세액 공제 합계액		⑤	

2. 연금계좌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

⑥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금액 합계 (⑤)	
⑦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된 연금계좌에서 소득·세액 공제 받은 금액	
⑧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금액 잔액 (⑥-⑦)	

※ ⑦란과 관련하여 2013.1.1 전에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와 관련된 금액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 2017.3.10.>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 취급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연금계좌 가입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⑨ 계좌유형	⑩ 계좌번호

1. 연금계좌 납입명세 및 과세제외금액 확인 명세

확인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⑪연도	⑫납입액	⑬해당 과세연도 납입액 중 인출액	⑭순납입액 (⑫-⑬)	⑮ ⑬외 인출액	⑯영 제118조의3에 따른 전환금액	⑰총납입액 (⑭-⑮)	⑱ 총납입액누계

2.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명세

확인일	⑲ 사유	⑳ 확인처(계좌)	㉑ 확인금액	사 유
				1. 영 제201조의10제2항에 따라 확인되는 분 2. 영 제201조의10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분
합 계				

㉒ 확인대상납입액(⑱-㉑)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연금계좌 납입명세 및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계좌취급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⑨란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⑪ ~ ⑯에서 납입액과 인출액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⑯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1항에 따라 전환 신청된 금액을 적으며, 해당 금액은 ⑫납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⑲란에는 해당 계좌에서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확인 사유를 구분(1 또는 2)하여 적습니다.
5. ⑳란에는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이 있는 경우(사유 중 "2"에 해당) 다른 연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6. ㉒란에는 해당 계좌의 납입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에 합산될 수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나) 이연퇴직소득 (소법 §146②)

퇴직소득을 아래와 같이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다) 기타 금액 (소법 §20의3①2호 나목 ~ 라목)

①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소법 §59의3①)
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③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연금수령한도 초과하여 인출 (소령 §40의3③)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 (소령 §40의3④)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4)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 (소령 §118의3)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상기 연금계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부칙(25193호, 2014.2.21.) *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18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소령 §40의3⑤)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① 연금계좌 인출순서

과세제외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납입액 등

② 연금계좌 손실순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납입액 등 → 이연퇴직소득 → 과세제외

6) 적용사례

① 연금저축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금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이지 여부(법령해석과-3220, 2018.12.11.)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② 舊「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인출금의 소득구분 (법령해석과-5966, 2017.09.28.)

舊「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1호나목 휴직의 범위에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 2017.08.21.)

의료목적의 연금수령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금액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퇴사는 휴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④ 연금계좌 상호이체 요건 중 연금수령 개시 신청 포함 여부
(기재부 소득세제과-104, 2017.0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⑤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 인출 후 소득원천이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법령해석과-3152, 2016.10.06.)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을 인출할 때「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10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는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사 연금계좌의 이체(소령 §40의 4)

1) 인출로 보지 않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이체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본다.

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②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③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2)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 이체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① 연금수령요건(다. 1) ①, ②의 요건에 한함)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② 연금수령요건(다. 1) ①, ②의 요건에 한함)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3) 일부 금액 이체

1)에 따라 일부 금액이 이체(③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4)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5)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연금계좌이체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를 이체 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15.3.13.> (앞쪽)

[ ] 연금계좌 이체명세서

([ ]가입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접수자 보관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가 입 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금융기관	이관	④ 법인명(상호)	⑤ 지점명
	수관	⑥ 법인명(상호)	⑦ 지점명

Ⅰ 이체하는 연금계좌 명세	⑧ 연금계좌구분	[ ] 연금저축계좌 [ ] 퇴직연금계좌([ ] DC [ ] IRP [ ] 과학기술인연금)
		[ ] 연금수령 개시 전 [ ] 연금수령 개시 후
	⑨ 계좌번호	
	⑩ 가입일자	
	⑪ 납입기간 만료일	
	⑫ 연금개시일자	
	⑬ 이체일자	

Ⅱ. 이체금액명세	구 분		이 체 액			
	과세제외금액	⑭ 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				
		⑮ 그 외				
	이연퇴직소득	⑯ 세액이연분				
		⑰ 전 환 분				
	⑱ 세액공제(소득공제)분					
	⑲ 운용수익		(+)		(-)	
	합 계					

Ⅲ. 과세이연정보	이연퇴직소득세	⑳ 세액이연분	
		㉑ 전 환 분	

※ 첨부 :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위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에 따라 연금계좌 이체명세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이관 연금계좌 취급자 (인)

수관 연금계좌 취급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 연금계좌의 승계

1)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소법 §44)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2)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 (소령 §100의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도록 하는 연금수령 요건 판단시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연금계좌의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3)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①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②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이 경우 사망확인일은 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

참고

연금저축(조특법 §86의2, 2013.1.1. 삭제→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로 개정)

2001.1.1. 이후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연금저축의 요건

①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이고,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③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나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입시기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라) 연금소득 계산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text{연금소득} = \text{연금수령액} \times \left(1 - \frac{\text{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text{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 \right)$$

(마) 연금저축 중도해지 등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소법 §21)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text{기타소득} = \text{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times \left(1 - \frac{\text{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right)$$

*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바) 해지가산세 추징 ('13.3.1.이후 가입자는 해당없음)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연금저축 취급기관은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연금저축 취급기관이 소득세 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등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지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다음의 연금저축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저축자의 해외이주 ④ 사업장의 폐업
⑤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⑥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소득세법 부칙(11614호, 2013.1.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5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과세여부(법령해석소득-43, 2017.3.17.)**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민법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舊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님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관련법령	舊 조특법 제86조	舊 조특법 제86조의 2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별 300만원 이내	분기별 300만원 이내
납입기간	10년 이상	10년 이상
계약조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지급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지급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
공제한도	연 72만원	연 400만원
소득구분	과세제외 : 계약조건 충족시 이자소득* :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과세제외	연금소득 : 연금수령(운용수익 포함) 원천징수세율 5% 기타소득* :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후 연금외수령 * 사망으로 해지, 연금외수령하면 연금소득 과세
부득이한 사 유	사망, 해외이주, 천재 · 지변, 퇴직, 폐업, 본인 3월 이상 요양,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해당없음
해 지 가 산 세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 (추징) 저축불입액의 4%(근로소득세) (한도) 연간 72,000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예외) 특별해지사유 발생 *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 사망 · 해외이주, 천재 · 지변, 퇴직, 폐업, 본인 3월 이상 요양,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 (추징) 매년 납입액(400만원 한도)의 2% (한도) 해지환급금 (예외) 특별해지사유 발생 *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 사망, 해외이주, 천재 · 지변, 퇴직, 폐업, 본인 3월 이상 요양,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3 분리과세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한다. (소법 §14③9호)

①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③ ①, ②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선택적 분리과세).

1) 적용사례

①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한 이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령해석과-1556, 2017.10.27.)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4 연금소득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소령 §50⑤).

①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귀속연도(원천세과-548, 2010.07.07.)**
>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연금 일부정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퇴직연금 등에 대한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

③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5 연금소득 원천징수

가 공적연금소득 (소법 §143의2)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간이세액표 적용 (소칙 §93의2)

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의2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나)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소법 §143의4)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

연금소득수입금액

- 2002년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바과세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연금액 전액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연금소득금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산출세액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가) 공적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및 첨부서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일시퇴거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별지 제39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기한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소법 §143의6)

①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오류 확인

연금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오류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해당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③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열람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⑤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 연말정산세액 계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소법 §143의6)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원천징수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기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 + 자녀세액 + 표준세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라)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소법 §143의5)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마) 원천징수세액 환급

연말정산 결과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소법 §143의4).

나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 (소법 §129①5호의2)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1) 공적연금소득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2) 공적연금소득 외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구 분		세 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100분의 4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 적용('20.1.1.이후 연금수령분부터)

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소법 §143의7)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5)]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소령§201의8)

마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법 §164)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연금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5)] <개정 2019.3.20.>

관리번호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 감면기간	부터 까지

연금지급내역	⑪ 총연금수령액	⑫ 연금제외소득 (2001.12.31.이전분)	⑬ 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⑭ 총연금액(⑪-⑫-⑬)

정 산 명 세

⑮ 총연금액(=⑭)		㉖ 종합소득 과세표준(⑰-㉕)	
⑯ 연금소득공제		㉗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㉘「소득세법」	
		세액감면 ㉙「조세특례제한법」	
⑰ 연금소득금액(⑮－⑯)		세액감면 ㉚ 감면세액 계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⑱ 본인		세액공제 ㉛자녀	공제대상자녀 (명)
		⑲ 배우자			출생·입양자 (명)
		⑳ 부양가족(명)		㉜ 표준세액공제	
	추가공제	㉑ 경로우대(명)		㉝ 외국납부	
		㉒ 장애인(명)			
		㉓ 부녀자		㉞ 세액공제 계	
		㉔ 한부모			
	㉕ 소득공제 계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㉟ 결 정 세 액				
	㊱ 기납부세액				
	㊲ 차감징수세액				

㊳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적으며, 본인은 적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㊲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2015년~2020년)〉

□ 연금수령

<table>
<tr><th rowspan="2">소득의 원천</th><th colspan="5">연금수령</th></tr>
<tr><th>소득구분</th><th>과세구분</th><th colspan="3">원천징수세율</th></tr>
<tr><td>과세제외</td><td>-</td><td>과세제외</td><td colspan="3">-</td></tr>
<tr><td>이연퇴직소득
(소법 §20의3 2호 가목)</td><td rowspan="3">연금소득</td><td rowspan="3">종합과세[1)]
분리과세[2)]</td><td colspan="2">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
* 연금 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시 적용</td><td rowspan="3">퇴직
연금
계좌
원천</td></tr>
<tr><td>세액공제
(소법 §20의3 2호 나목)</td><td colspan="2" rowspan="2">※ 중복 시 유리한 세율 적용
○ 연령 요건
- 70세 미만 : 5%
-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종신형 연금보험 : 4%
- 사망시까지 연금수령</td><td rowspan="2">연금
저축
계좌
원천</td></tr>
<tr><td>운용수익
(소법 §20의3 2호 다목)</td></tr>
</table>

1)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분리과세 제외)
2) ① 이연퇴직소득 ②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
③ ①·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외수령

<table>
<tr><th rowspan="2">소득의 원천</th><th colspan="5">연금수령</th></tr>
<tr><th>소득구분</th><th>과세구분</th><th colspan="3">원천징수세율</th></tr>
<tr><td>과세제외</td><td>-</td><td>과세제외</td><td colspan="3">-</td></tr>
<tr><td>이연퇴직소득
(소법 §20의3 2호 가목)</td><td>퇴직소득</td><td>분류과세</td><td colspan="2">연금외수령세율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td><td rowspan="2">퇴직
연금
계좌
원천</td></tr>
<tr><td>세액공제
(소법 §20의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법 §20의3 2호 다목)</td><td>기타소득[1)]</td><td>분리과세</td><td>15%</td><td>연금
저축
계좌
원천</td></tr>
</table>

1)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본인·가족의 3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2013년~2014년)〉

□ 연금수령

<table>
<tr><th rowspan="2">소득의 원천</th><th colspan="5">연금수령</th></tr>
<tr><th>소득구분</th><th>과세구분</th><th colspan="3">원천징수세율</th></tr>
<tr><td>과세제외</td><td>-</td><td>과세제외</td><td colspan="3">-</td></tr>
<tr><td>이연퇴직소득
(소법 §20의3 2호 가목)</td><td rowspan="3">연금소득
퇴직소득[1]</td><td rowspan="3">종합과세[2]
분리과세[2]</td><td colspan="2">3%</td><td rowspan="3">퇴직
연금
계좌
원천</td></tr>
<tr><td>세액공제
(소법 §20의3 2호 나목)</td><td colspan="2" rowspan="2">※ 중복 시 낮은 세율 적용
○ 연령 요건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종신형 연금보험 : 4%
- 사망시까지 연금수령</td></tr>
<tr><td>운용수익
(소법 §20의3 2호 다목)</td><td>연금
저축
계좌
원천</td></tr>
</table>

1)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특례(연금수령 → 연금외수령) : Min(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 - 1,200만원)
2) 종합과세(연 1,200만원 초과), 선택적 분리과세(연 1,200만원 이하)

□ 연금외수령

<table>
<tr><th rowspan="2">소득의 원천</th><th colspan="5">연금수령</th></tr>
<tr><th>소득구분</th><th>과세구분</th><th colspan="3">원천징수세율</th></tr>
<tr><td>과세제외</td><td>-</td><td>과세제외</td><td colspan="3">-</td></tr>
<tr><td>이연퇴직소득
(소법 §20의3 2호 가목)</td><td>퇴직소득</td><td>분류과세</td><td colspan="2">연금외수령세율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td><td rowspan="3">퇴직
연금
계좌
원천</td></tr>
<tr><td rowspan="2">세액공제
(소법 §20의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법 §20의3 2호 다목)</td><td rowspan="2">기타소득</td><td>종합과세[1]
분리과세[1]</td><td>- 통상적인 경우
• '14년 15%, '13년 20%</td><td rowspan="2">연금
저축
계좌
원천</td></tr>
<tr><td>분리과세[3]</td><td>- 부득이한 경우
• '14년 12%, '13년 15%</td></tr>
</table>

1) 종합과세(연 300만원 초과), 선택적 분리과세(연 300만원 이하)
2)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무조건 분리과세)
*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본인·가족의 3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6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연금소득 종합소득합산과세 계산 구조

총연금액 —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연금액 전액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 종합소득 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법 §73①,②)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②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은 자

나 연금소득금액 계산 (소법 §20의3③)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연금액에는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다.

다 연금소득공제 (소법 §47의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총 연금액 4,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 연금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7 연금소득 계산 구조 및 계산 사례

가 DC 에서 IRP 로 이전시 과세이연

홍길동씨는 (주)원천의 DC 제도에 가입해 있다가 퇴사하게 되면서 퇴직급여를 (주)국세은행의 IRP 계좌로 이전신청하였다. 관련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입 사 일	퇴 사 일	이 전 일
일 자	2009.1.1.	2019.3.30.	2019.4.1.

퇴직급여는 1억원이며, 이 중 개인부담금은 5백만원이다.(전액 2019년 납입분). 이연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

〈계산내역〉

① 종전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4,609,634

퇴직소득금액	95,000,000	= (100,000,000 - 5,000,000)
(-) 퇴직소득공제	42,800,000	
정률공제	38,000,000	= 95,000,000 × 40%
근속연수공제	4,800,000	= 400만원 + 80만원(11년 - 1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52,200,000	

	2012년 이전 근무	2013년 이후 근무	합 계
과세표준 안분	18,981,818 (52,200,000×4/11)	33,218,182 (52,200,000-18,981,818)	52,200,000
(÷) 근속연수	4년	7년	
(=) 연평균과세표준	4,745,454		
(=)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23,727,270	
(×) 세율	6%	15%	
(=) 연평균산출세액	284,727	2,479,090	
(×) 근속연수 ÷ 5 × 근속연수	4년	÷ 5 × 7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1,138,908	3,470,726	4,609,634

② 개정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4,177,250

퇴직소득금액	95,000,000	= (100,000,000-5,000,000)
(-) 퇴직소득공제	4,800,000	
근속연수공제	4,800,000	= 400만원 + 80만원(11년 - 10년)
(=) 환산급여	98,400,000	= (95,000,000-4,800,000) ÷ 11년 × 12
(-) 환산급여공제	60,820,000	= 45,200,000 + (98,400,000-70,000,000) × 55%
(=) 퇴직소득과세표준	37,580,000	
(×) 세율	15%	
(=) 환산산출세액	4,557,000	
÷ 12 × 근속연수	÷ 12 × 11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4,177,250	

③ 이연퇴직소득세 : 4,263,726(차감원천징수세액 : 0)

특례적용산출세액*	4,263,726	(①4,609,634 × 20%) + (②4,177,250 × 80%)
(-) 기납부세액	0	
(=) 차감납부세액	4,263,726	
(-) 이연퇴직소득세	4,263,726	
(=) 차감원천징수세액	0	

* (2019년 특례적용 산출세액 비율) 종전 : 개정 = 20% : 80%

나 과세이연한 퇴직급여를 연금수령하는 경우

> 홍길동씨가 1 의 IRP 계좌에서 2019.12.31. 2천4백만원을 연금수령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2019년 운용수익은 500,000원)
>
> * 한도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IRP 구성 : 과세제외(5,000,000), 이연퇴직소득(95,000,000), 운용수익(500,000)

○ 인출순서 : 24,000,000(과세제외 5,000,000, 이연퇴직소득 19,000,000)

○ 원천징수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적용함

○ 원천징수세액 : 19,000,000 × {(4,263,726 / 95,000,000) × 70%} = 596,921원

* 연금외수령 세율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다 과세이연한 퇴직급여를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 홍길동씨가 1 의 IRP 계좌에서 2019.12.31. 2천4백만원을 인출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2019년 운용수익은 500,000원)
>
> * 이연퇴직소득 수령분 전액을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가정함

○ IRP 구성 : 과세제외(5,000,000), 이연퇴직소득(95,000,000), 운용수익(500,000)

○ 인출순서 : 24,000,000(과세제외 5,000,000, 이연퇴직소득 19,000,000)

○ 원천징수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 원천징수세액 : 19,000,000 × (4,263,726 / 95,000,000) = 852,745원

라 연금저축에서 연금수령하는 경우

> 과세제외금액 5,000,000원, 과세금액 12,000,000원(운용수익 1,000,000원 포함)인 연금저축에서 2019.5.31.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하여 2019.6.2. 10,000,000원을 연금수령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
> *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은 없으며, 연금수령일 현재 70세로 가정함

○ 인출순서 : 10,000,000(과세제외 5,000,000, 과세금액 5,000,000)

○ 원천징수 : 연금저축에서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을 연금수령한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원천징수세액 : 5,000,000 × 4%* = 200,000원

*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마 연금저축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 과세제외금액 5,000,000원, 과세금액 12,000,000원(운용수익 1,000,000원 포함)인 연금저축에서 2019.5.31.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
> * 일시금 수령일 현재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가정함

○ 인출순서 : 과세제외(5,000,000), 과세(12,000,000)

○ 원천징수 : 연금저축에서 연금외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 원천징수세액 : 12,000,000 × 15%* = 1,800,000원

* 무조건 분리과세

바 배우자의 연금승계

> 홍길동씨(81세)는 연금을 수령하다 2019.1.1. 사망함. **홍길동씨 배우자(75세)가 연금계좌를 승계**(2019.4.1. 신청)하는 경우와 **승계하지 않는 경우** 과세방법은?
> 홍길동씨 연금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019.1.1.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은 55,000,000원
> (소득·세액공제금액 50,000,000원, 운용소득 5,000,000원)
> - 2019.1.1.부터 2019.3.31.까지 수령한 연금액 3,000,000원(원천징수세율 3% 적용하여 90,000원 원천징수)
> - 2019.4.1.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은 52,500,000원(1.1. 이후 운용수익 50만원 증가)

○ **배우자가 2019.4.1. 연금계좌를 승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신청을 한 경우 홍길동씨 사망일부터 그 배우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1.1.부터 3.31.까지 인출한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었고 연령이 75세이므로 1.1.부터 3.31.까지 배우자가 인출한 것으로 보는 3,00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4%를 적용하면 배우자에게 원천징수할 세액은 120,000원이다.

따라서 **홍길동씨와 배우자의 원천징수세액 차이 30,000원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신청하지 않은 경우(사망확인일 2019.4.1.)**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일 현재 인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 55,500,000원(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52,500,000원 +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금액 3,000,000원)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90,000원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① 사망확인일 인출액 : 52,500,000원 + 3,000,000원 = 55,500,000원

② 소득원천 : 소득·세액공제금액 50,000,000원, 운용수익 5,500,000원

③ 원천징수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인출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함

④ 원천징수할 세액 55,500,000원 × 3% = 1,665,000원

(-) 기 원천징수세액 90,000원

(=) 피상속인 원천징수세액 1,575,000원

사 종합사례 Ⅰ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 후 연금수령)

1.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1.1. 입사하였고 2019.3.28. 퇴사하였음.
   ⇒ 퇴직금 : 45,000,000원
2. 홍길동씨는 2006.7.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였고 퇴직금은 퇴사 후 2019.3.31. IRP계좌로 전액 이체하였음.
3. 홍길동씨는 2010.5.1. 중간정산 신청하여 2010.6.30.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음.
   ⇒ 중간정산 내용 : 퇴직급여 138,000,000원, 세액 4,020,000원
4. 홍길동씨는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2019.4.1.부터 매월 1,000,000원을 연금으로 수령하였음.
5.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평가액 : 45,000,000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연금계좌평가액 : 40,000,000원(운용수익 4,000,000원 포함)

☞ 홍길동씨가 2019년에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는 얼마인가?

① 퇴직으로 인한 원천징수 (이연퇴직소득세액 6,237,295원)

가. 종전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8,524,875

퇴직소득금액	183,000,000	(138,000,000 + 45,000,000)
(-) 퇴직소득공제	82,000,000	
정률공제	73,200,000	= 183,000,000 × 40%
근속연수공제	8,800,000	= 400만원 + 80만원(16년 - 1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101,000,000	

	2012년 이전 근무	2013년 이후 근무	합 계
과세표준 안분	56,812,500 (101,000,000×9/16)	44,187,500 (101,000,000-56,812,500)	101,000,000
(÷) 근속연수	9년	7년	
(=) 연평균과세표준	6,312,500		
(=)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31,562,500	
(×) 세율	6%	15%	
(=) 연평균산출세액	378,750	3,654,375	
(×) 근속연수	9년		
÷ 5 × 근속연수		÷ 5 × 7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3,408,750	5,116,125	8,524,875

나. 개정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10,690,400

퇴직소득금액	183,000,000	= (138,000,000+45,000,000)
(-) 퇴직소득공제	8,800,000	
근속연수공제	8,800,000	= 400만원 + 80만원(16년 - 10년)
(=) 환산급여	130,650,000	= (183,000,000-8,800,000) ÷ 16년 × 12
(-) 환산급여공제	75,492,500	= 61,700,000 + (130,650,000-100,000,000) ×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55,157,500	
(×) 세율	24%	
(=) 환산산출세액	8,017,800	
÷ 12 × 근속연수	÷ 12 × 16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10,690,400	

다. 이연퇴직소득세 : 6,237,295 (차감원천징수세액 : 0)

특례적용산출세액*	10,257,295	(①8,524,875 × 20%) + (②10,690,400 × 80%)
(-) 기납부세액	4,020,000	
(=) 차감납부세액	6,237,295	
(-) 이연퇴직소득세	6,237,295	
(=) 차감원천징수세액	0	

* (2019년 특례적용 산출세액 비율) 종전 : 개정 = 20% : 80%

○ 근속연수 : 전체 16년, 2012.12.31이전 9년, 2013.01.01이후 7년

② 연금계좌 평가금액

소득 원천		연금수령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	인출금액
평가금액		45,000,000	40,000,000	
인출 순서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45,000,000	36,000,000	9,000,000(9개월)
	소득・세액공제금액			
	운용수익		4,000,000	

③ IRP 계좌의 인출순서 및 금액

○ 1순위 : 과세제외 금액(없음)

○ 2순위 : 이연퇴직소득(45,000,000원)

☞ 2019년도에 인출한 9,000,000원은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한 것에 해당함

④ 원천징수

○ 연금수령한도 : {45,000,000 / (11-6)} × 120% = 10,800,000원
인출금액 9,000,000원은 연금수령한도 이내금액이므로 연금수령으로 봄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세율의 70%를 적용**한다.

- 연금외수령 세율 : 6,237,295/45,000,000 = 13.860655%
- 원천징수세액 : 9,000,000 × 9.702458%(=13.860655%×70%) = 873,221원

⑤ 2019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 연금소득세 873,221원

〈DC계좌에서 퇴직금을 IRP로 이체시 제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16.2.25.> (앞쪽)

관리 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v]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①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①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v]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v]부		

징 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 ** *****	② 법인명(상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 *******	⑤ 소재지(주소)	*** *** *** **		
소득자	⑥ 성 명	* * *	⑦ 주민등록번호	****** *******		
	⑧ 주 소	*** *** *** **				

계 좌 명 세	⑨ 계좌번호	**********	⑩ 연금수령 개시신청일		⑪ 연금계좌평가액	
	⑫ 연금수령 기산연도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	⑭ 연금 수령연차	⑮ 연금수령한도 ([⑪/(11-⑭)]×120%)	
			2013.3.1. 전[v] 이후[ ]			

소 득 명 세	⑯ 귀속연월	2019.12			⑰ 퇴직분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이연퇴직소득 전환분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㉒ 부득이한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연금수령	⑱ 일반연금					㉓ 연금외 수령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연금수령	⑲ 의료비인출						
	연금수령	⑳ 부득이한 사유						
	㉑연금외수령							

	구 분				지 급 액	세 액
	소 득	원 천		세 율		
세 액 명 세	㉔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㉕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 환 분			
		㉖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㉗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 환 분			
		㉘ 퇴직분			45,000,000	0
	기타소득	㉙ 연금외수령		15%		

	구 분		지 급 액	소 득 세	지방소득세	세 액 계
납 부 명 세	㉚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㉛ 퇴직소득					
	㉜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❷ 퇴직	❸ 세액이연 퇴직소득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사업자등록번호
□□□-□□-□□□□□

[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단위 : 원)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소득원천			① 과세제외 금액	② 소득이연 전환분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④ 세액공제분 (소득공제분)	⑤ 운용수익
⑥ 과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전기말잔액						
⑦ 당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당기잔액						

작 성 방 법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1. ① 과세제외금액 란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3.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5.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10.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2.「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3쪽 중 제2쪽)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퇴직급여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 종	정 산
	① 근무처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③ 퇴직급여	138,000,000	45,000,000	

근속연수	구 분		④ 입사일	⑤ 기산일	⑥ 퇴사일	⑦ 지급일	⑧ 근속월수	⑨ 제외월수	⑩ 가산월수	⑪ 중복월수	⑫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2004.1.1	2004.1.1	2010.6.30	2010.6.30	78				7
	최종 근속연수		2004.1.1	2010.7.1	2019.3.28	2019.3.28	105				9
	정산 근속연수			2002.1.1	2019.3.28		183				16
	안분	2012.12.31. 이전		2002.1.1	2012.12.31		108				9
		2013.01.01. 이후		2013.1.1	2017.3.28		75				7

2016~2019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 산 내 용	금 액
개정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⑬ 정산퇴직소득(③)	183,000,000
		⑭ 근속연수공제	8,800,000
		⑮ 환산급여 [(⑬-⑭)× 12배/정산근속연수]	130,650,000
		⑯ 환산급여별공제	75,492,500
		⑰ 퇴직소득과세표준(⑮-⑯)	55,157,500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⑱ 환산산출세액(⑰× 세율)	8,017,800
		⑲ 산출세액(⑱× 정산근속연수/12배)	10,690,400

		계 산 내 용	금 액		
종전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⑳ 퇴직소득(③)	183,000,000		
		㉑ 퇴직소득정률공제	73,200,000		
		㉒ 근속연수공제	8,800,000		
		㉓ 퇴직소득과세표준(⑳-㉑-㉒)	101,000,000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2012. 12. 31. 이전	2013. 1. 1. 이후	합 계
		㉔ 과세표준안분 (㉓×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56,812,500	44,187,500	101,000,000
		㉕ 연평균과세표준(㉔/각근속연수)	6,312,500	6,312,500	6,312,500
		㉖ 환산과세표준(㉕× 5배)		31,562,500	31,562,500
		㉗ 환산산출세액(㉖× 세율)		3,654,375	3,654,375
		㉘ 연평균산출세액(㉗/5배)	378,750	730,875	1,109,625
		㉙ 산출세액(㉘× 각 근속연수)	3,408,750	5,116,125	8,524,875

퇴직소득 세액계산	㉚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9
	㉛ 퇴직소득세 결정세액 (⑲× 퇴직연도별 비율) +[㉙× (100%-퇴직연도별 비율)]	10,257,295
	㉜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4,020,000
	㉝ 신고대상세액	6,237,295
	㉞ 이연 퇴직소득세	6,237,295
	㉟ 차감원천징수세액(㉝-㉞)	0

이연세액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	*** ** *****	*****	******	45,000,000	45,000,000	6,237,295
	㊱ 합 계						

작 성 방 법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IRP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제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16.2.25.> (앞쪽)

관리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v]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①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①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v]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v]부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 ** *****	② 법인명(상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 *******	⑤ 소재지(주소)	*** *** *** **		
소득자	⑥ 성 명	* * *	⑦ 주민등록번호	****** *******		
	⑧ 주 소	*** *** *** **				

계좌명세	⑨ 계좌번호	**********	⑩ 연금수령 개시신청일	2017.4.1.	⑪ 연금계좌평가액	45,000,000
	⑫ 연금수령 기산연도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		⑭ 연금 수령연차	⑮ 연금수령한도 ([⑪/(11-⑭)]×120%)
	2019		2013.3.1. 전[v] 이후[ ]		6	10,800,000

소득명세	⑯ 귀속연월	2019.12			⑰ 퇴직분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이연퇴직소득 전환분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㉒ 부득이한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연금수령	⑱ 일반연금		9,000,000				
		⑲ 의료비인출						
		⑳ 부득이한 사유					㉓ 연금외 수령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㉑연금외수령							

세액명세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㉔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㉕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9.702458%	9,000,000	873,221
		전환분			
	㉖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㉗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㉘ 퇴직분				
기타소득	㉙ 연금외수령		15%		

납부명세 구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㉚ 연금소득	종합과세		873,220	87,320	960,540
	무조건분리과세	9,000,000			
㉛ 퇴직소득					
㉜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❷ 퇴직	❸ 세액이연 퇴직소득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사업자등록번호
□□□-□□-□□□□□

[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단위 : 원)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소득원천			① 과세제외 금액	② 소득이연 전환분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④ 세액공제분 (소득공제분)	⑤ 운용수익
⑥ 과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전기말잔액						
⑦ 당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45,000,000		
		입금					
	감소	이체					
		인출			9,000,000		
	당기잔액				36,000,000		4,000,000

작 성 방 법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1. ① 과세제외금액 란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3.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5.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10.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 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2.「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3쪽 중 제2쪽)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퇴직급여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 종	정 산
	① 근무처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퇴직급여			

근속연수	구 분		④ 입사일	⑤ 기산일	⑥ 퇴사일	⑦ 지급일	⑧ 근속월수	⑨ 제외월수	⑩ 가산월수	⑪ 중복월수	⑫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안분	2012.12.31. 이전									
		2013.01.01. 이후									

2016~2019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 산 내 용	금 액
개정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⑬ 정산퇴직소득(③)	
		⑭ 근속연수공제	
		⑮ 환산급여 [(⑬-⑭)× 12배/정산근속연수]	
		⑯ 환산급여별공제	
		⑰ 퇴직소득과세표준(⑮-⑯)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⑱ 환산산출세액(⑰× 세율)	
		⑲ 산출세액(⑱× 정산근속연수/12배)	

		계 산 내 용	금 액		
종전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⑳ 퇴직소득(③)			
		㉑ 퇴직소득정률공제			
		㉒ 근속연수공제			
		㉓ 퇴직소득과세표준(⑳-㉑-㉒)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2012. 12. 31. 이전	2013. 1. 1. 이후	합 계
		㉔ 과세표준안분 (㉓×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㉕ 연평균과세표준(㉔/각근속연수)			
		㉖ 환산과세표준(㉕× 5배)			
		㉗ 환산산출세액(㉖× 세율)			
		㉘ 연평균산출세액(㉗/5배)			
		㉙ 산출세액(㉘× 각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계산	㉚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9
	㉛ 퇴직소득세 결정세액 (⑲× 퇴직연도별 비율) +[㉙× (100%-퇴직연도별 비율)]	
	㉜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㉝ 신고대상세액	
	㉞ 이연 퇴직소득세	
	㉟ 차감원천징수세액(㉝-㉞)	

이연세액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㊱ 합 계						

작 성 방 법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3쪽 중 제3쪽)

❸ 세액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계산

			① 이연퇴직소득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증가액	③ 이연퇴직소득	④ 이연퇴직소득세	⑤ 이연퇴직소득연금외수령세율	⑥ 이연퇴직소득감소액	⑦ 이연퇴직소득세감소액	⑧ 이연퇴직소득잔액	⑨ 이연퇴직소득세잔액
전 환 분											
세 액 이연분	증가 없음				45,000,000	6,237,295	13.860655%	9,000,000	1,247,458	36,000,000	4,989,837
	이연퇴직소득증가회차	1									
		2									
		3									
		4									

작 성 방 법

❸ 세액이연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1. 세액이연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할 때는 '이연퇴직소득 증가 없음'행에만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에서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증가가 없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2.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및 이연퇴직소득 증가 회차는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적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은 입금 및 이체되는 이연퇴직소득금액과 해당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이 1회차 증가한 이후 2회차 증가 전까지 지급된 이연퇴직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⑤~⑨에 해당하는 금액은 1회차 행에 적고, 2회차, 3회차 등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3. ③ 이연퇴직소득란과 ④ 이연퇴직소득세란 :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0시의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을 적고,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이연퇴직소득 입금 회차의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에 각각 해당 입금 회차의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과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을 더한 값을 적습니다.

4.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란은 같은 행의 ④ 이연퇴직소득세를 ③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 단위로 적습니다.

5.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란은 연금계좌에서 이체 및 인출된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적습니다.

6.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란은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에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7.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은 ③ 이연퇴직소득에서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은 ④ 이연퇴직소득세에서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종합사례 Ⅱ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 후 연금외수령)

1.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1.1. 입사하였고 2019.3.28. 퇴사하였음.
   ⇒ 퇴직금 : 45,000,000원
2. 홍길동씨는 2006.7.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였음. 퇴직금은 퇴사 후 2016.3.31. IRP계좌로 전액 이체하였으나 **2019.5.1. 해지하고 전액 연금외수령함.**
3. 홍길동씨는 2010.5.1. 중간정산 신청하여 2010.6.30.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음.
   ⇒ 중간정산 내용 : 퇴직급여 138,000,000원, 세액 4,020,000원
4. 연금외수령일 현재 연금계좌평가액 : 45,000,000원(운용수익은 없는 것으로 가정)

☞ 홍길동씨가 2019년에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는 얼마인가?

① 퇴직으로 인한 원천징수 (이연퇴직소득세액 6,237,295원)

가. 종전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8,524,875

퇴직소득금액	183,000,000	(138,000,000 + 45,000,000)
(-) 퇴직소득공제	82,000,000	
정률공제	73,200,000	= 183,000,000 × 40%
근속연수공제	8,800,000	= 400만원 + 80만원(16년 - 1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101,000,000	

	2012년 이전 근무	2013년 이후 근무	합 계
과세표준 안분	56,812,500 (101,000,000×9/16)	44,187,500 (101,000,000-56,812,500)	101,000,000
(÷) 근속연수	9년	7년	
(=) 연평균과세표준	6,312,500		
(=)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31,562,500	
(×) 세율	6%	15%	
(=) 연평균산출세액	378,750	3,654,375	
(×) 근속연수	9년		
÷ 5 × 근속연수		÷ 5 × 7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3,408,750	5,116,125	8,524,875

나. 개정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10,690,400

퇴직소득금액	183,000,000	= (138,000,000+45,000,000)
(-) 퇴직소득공제	8,800,000	
근속연수공제	8,800,000	= 400만원 + 80만원(16년 - 10년)
(=) 환산급여	130,650,000	= (183,000,000-8,800,000) ÷ 16년 × 12
(-) 환산급여공제	75,492,500	= 61,700,000 + (130,650,000-100,000,000) ×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55,157,500	
(×) 세율	24%	
(=) 환산산출세액	8,017,800	
÷ 12 × 근속연수	÷ 12 × 16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10,690,400	

다. 이연퇴직소득세 : 6,237,295 (차감원천징수세액 : 0)

특례적용산출세액*	10,257,295	(①8,524,875 × 20%) + (②10,690,400 × 80%)
(-) 기납부세액	4,020,000	
(=) 차감납부세액	6,237,295	
(-) 이연퇴직소득세	6,237,295	
(=) 차감원천징수세액	0	

* (2019년 특례적용 산출세액 비율) 종전 : 개정 = 20% : 80%

○ 근속연수 : 전체 16년, 2012.12.31이전 9년, 2013.01.01이후 7년

② **IRP** 계좌의 인출순서 및 금액

○ 1순위 : 과세제외 금액(없음)

○ 2순위 : 이연퇴직소득(45,000,000원)

☞ 2019년도에 인출한 45,000,000원은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한 것에 해당함

③ 원천징수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 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원천징수 세율은 연금외수령 세율을 적용한다.

- 연금외수령 세율 : 6,237,295 / 45,000,000
- 원천징수세액 : 45,000,000 × (6,237,295 / 45,000,000) = 6,237,295원

④ **2019**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 퇴직소득세 6,237,295원

〈IRP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제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16.2.25.> (앞쪽)

관리 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v]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①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①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v]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v]부		

징 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 ** *****	② 법인명(상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 *******	⑤ 소재지(주소)	*** *** *** **		
소득자	⑥ 성 명	* * *	⑦ 주민등록번호	****** *******		
	⑧ 주 소	*** *** *** **				

계 좌 명 세	⑨ 계좌번호	**********	⑩ 연금수령 개시신청일		⑪ 연금계좌평가액	
	⑫ 연금수령 기산연도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	⑭ 연금 수령연차	⑮ 연금수령한도 ([⑪/(11-⑭)]×120%)	
			2013.3.1. 전[v] 이후[ ]			

소 득 명 세	⑯ 귀속연월	2019.05	⑰ 퇴직분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이연퇴직소득 전환분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연금수령	⑱ 일반연금					㉒ 부득이한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⑲ 의료비인출						
	⑳ 부득이한 사유					㉓ 연금외 수령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㉑연금외수령			45,000,000				

세 액 명 세	구 분				지 급 액	세 액
	소 득	원 천		세 율		
	㉔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㉕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 환 분			
		㉖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㉗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13.860655%	45,000,000	6,237,295
			전 환 분			
		㉘ 퇴직분				
	기타소득	㉙ 연금외수령		15%		

납 부 명 세	구 분		지 급 액	소 득 세	지방소득세	세 액 계
	㉚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㉛ 퇴직소득		45,000,000	6,237,290	623,720	6,861,010
	㉜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❷ 퇴직	❸ 세액이연 퇴직소득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사업자등록번호
□□□-□□-□□□□□

[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단위 : 원)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소득원천			① 과세제외 금액	② 소득이연 전환분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④ 세액공제분 (소득공제분)	⑤ 운용수익
⑥ 과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전기말잔액						
⑦ 당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45,000,000		
		입금					
	감소	이체					
		인출			45,000,000		
	당기잔액				0		

작 성 방 법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1. ① 과세제외금액 란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3.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5.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10.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 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2.「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3쪽 중 제2쪽)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퇴직급여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 종	정 산
	① 근무처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퇴직급여			

근속연수	구 분		④ 입사일	⑤ 기산일	⑥ 퇴사일	⑦ 지급일	⑧ 근속월수	⑨ 제외월수	⑩ 가산월수	⑪ 중복월수	⑫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안분	2012.12.31. 이전									
		2013.01.01. 이후									

2016~2019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 산 내 용	금 액
개정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⑬ 정산퇴직소득(③)	
		⑭ 근속연수공제	
		⑮ 환산급여 [(⑬-⑭)× 12배/정산근속연수]	
		⑯ 환산급여별공제	
		⑰ 퇴직소득과세표준(⑮-⑯)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⑱ 환산산출세액(⑰× 세율)	
		⑲ 산출세액(⑱× 정산근속연수/12배)	

		계 산 내 용	금 액		
종전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⑳ 퇴직소득(③)			
		㉑ 퇴직소득정률공제			
		㉒ 근속연수공제			
		㉓ 퇴직소득과세표준(⑳-㉑-㉒)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2012. 12. 31. 이전	2013. 1. 1. 이후	합 계
		㉔ 과세표준안분 (㉓×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㉕ 연평균과세표준(㉔/각근속연수)			
		㉖ 환산과세표준(㉕× 5배)			
		㉗ 환산산출세액(㉖× 세율)			
		㉘ 연평균산출세액(㉗/5배)			
		㉙ 산출세액(㉘× 각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계산	㉚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9
	㉛ 퇴직소득세 결정세액 (⑲× 퇴직연도별 비율) +[㉙× (100%-퇴직연도별 비율)]	
	㉜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㉝ 신고대상세액	
	㉞ 이연 퇴직소득세	
	㉟ 차감원천징수세액(㉝-㉞)	

이연세액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㊱ 합 계						

작 성 방 법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3쪽 중 제3쪽)

❸ 세액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계산

			① 이연퇴직소득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증가액	③ 이연퇴직소득	④ 이연퇴직소득세	⑤ 이연퇴직소득연금외수령세율	⑥ 이연퇴직소득감소액	⑦ 이연퇴직소득세감소액	⑧ 이연퇴직소득잔액	⑨ 이연퇴직소득세잔액
전 환 분											
세 액 이연분	증가 없음				45,000,000	6,237,295	13.860655%	45,000,000	6,237,295	0	0
	이연퇴직소득증가회차	1									
		2									
		3									
		4									

작 성 방 법

❸ 세액이연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1. 세액이연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할 때는 '이연퇴직소득 증가 없음'행에만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에서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증가가 없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2.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및 이연퇴직소득 증가 회차는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적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은 입금 및 이체되는 이연퇴직소득금액과 해당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이 1회차 증가한 이후 2회차 증가 전까지 지급된 이연퇴직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⑤~⑨에 해당하는 금액은 1회차 행에 적고, 2회차, 3회차 등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3. ③ 이연퇴직소득란과 ④ 이연퇴직소득세란 :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0시의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을 적고,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이연퇴직소득 입금 회차의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에 각각 해당 입금 회차의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과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을 더한 값을 적습니다.

4.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란은 같은 행의 ④ 이연퇴직소득세를 ③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 단위로 적습니다.

5.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란은 연금계좌에서 이체 및 인출된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적습니다.

6.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란은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에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7.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은 ③ 이연퇴직소득에서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은 ④ 이연퇴직소득세에서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자 종합사례 Ⅲ (연금저축계좌에서 과세제외 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1. 홍길동씨(60세)는 2019.1.1.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2019.1.5.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 연간 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2013.3.1. 전 연금계좌 가입).
2.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은 40,000,000원*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은 31,000,000원임(운용수익 1,000,000원 증가).
   * 소득원천 : 과세제외 10,000,000원, 세액공제 25,000,000원, 운용수익 5,000,000원

☞ 홍길동씨가 2019년에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는 얼마인가?

① 연금계좌 평가금액

소득 원천		연금수령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	인출금액
평가금액		40,000,000	31,000,000	
인출 순서	과세제외금액	10,000,000	0	10,000,000
	이연퇴직소득	-	-	
	소득·세액공제금액	25,000,000	25,000,000	
	운용수익	5,000,000	6,000,000	

② 연금수령한도 : {40,000,000 / (11-6)} × 120% = 9,600,000원
인출금액 10,000,000원 중 9,600,000원은 연금수령, 한도초과분 400,000원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③ 연금계좌 납입분에 대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제외 소득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더라도 과세제외**하므로 2019년도에 부담할 소득세는 없음

〈과세제외 소득을 연금수령한도 초과하여 인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16.2.25.> (앞쪽)

관리 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v]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①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①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v]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v]부		

징 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 ** *****	② 법인명(상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 *******	⑤ 소재지(주소)	*** *** *** **		
소득자	⑥ 성 명	* * *	⑦ 주민등록번호	****** *******		
	⑧ 주 소	*** *** *** **				

계 좌 명 세	⑨ 계좌번호	**********	⑩ 연금수령 개시신청일	2019. 1. 5.	⑪ 연금계좌평가액	40,000,000

⑫ 연금수령 기산연도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	⑭ 연금 수령연차	⑮ 연금수령한도 ([⑪/(11-⑭)]×120%)
2019	2013.3.1. 전[v] 이후[ ]	6	9,600,000

소 득 명 세	⑯ 귀속연월	2019.05				⑰ 퇴직분		
	인출분		과세제외 금 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㉒ 부득이한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세액이연분	전환분			
		연금수령 ⑱ 일반연금	9,600,000					
		⑲ 의료비인출						
		⑳ 부득이한 사유					㉓ 연금외 수령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㉑연금외수령	400,000					

	구 분				지 급 액	세 액
	소 득	원 천		세 율		
세 액 명 세	㉔ 과세제외금액				10,000,000	
	연금소득	㉕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 환 분			
		㉖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㉗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 환 분			
		㉘ 퇴직분				
	기타소득	㉙ 연금외수령		15%		

	구 분		지 급 액	소 득 세	지방소득세	세 액 계
납 부 명 세	㉚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㉛ 퇴직소득					
	㉜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❷ 퇴직	❸ 세액이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사업자등록번호
□□□-□□-□□□□□

[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단위 : 원)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소득원천			① 과세제외 금액	② 소득이연 전환분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④ 세액공제분 (소득공제분)	⑤ 운용수익
⑥ 과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10,000,000		25,000,000		
	감소	이체					
		인출					
	전기말잔액		10,000,000		25,000,000		5,000,000
⑦ 당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10,000,000				
	당기잔액		0		25,000,000		6,000,000

작 성 방 법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1. ① 과세제외금액 란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3.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5.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10.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 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2.「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차 종합사례 Ⅳ(연금저축계좌에서 과세 소득을 연금수령한도 초과 수령한 경우)

1. 홍길동씨(60세)는 2019.1.1.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2019.1.5.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 연간 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2013.3.1. 전 연금계좌 가입).
2.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은 40,000,000원*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은 29,000,000원임(운용수익 1,000,000원 감소).
   * 소득원천 : 세액공제 35,000,000원, 운용수익 5,000,000원

☞ 홍길동씨가 2019년에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는 얼마인가?

① 연금계좌 평가금액

소득 원천		연금수령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	인출금액
평가금액		40,000,000	29,000,000	
인출 순서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	-	
	소득·세액공제금액	35,000,000	25,000,000	10,000,000
	운용수익	5,000,000	4,000,000	

② 연금계좌 납입분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연금수령한 경우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금외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연금수령한도 : {40,000,000 / (11-6)} × 120% = 9,600,000원

○ 연금계좌 인출액 10,000,000원 중 **9,600,000원은 연금소득**으로, 한도초과분 **4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자 연령이 60세이므로 5%,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5%를 적용함

- 연금소득세 : 9,600,000 × 5% = 480,000원
- 기타소득세 : 400,000 × 15% = 60,000원

③ 2019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 540,000원

〈과세소득을 연금수령한도 초과하여 인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16.2.25.> (앞쪽)

관리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v]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①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①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v]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v]부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 ** *****	② 법인명(상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 *******	⑤ 소재지(주소)	*** *** *** **		
소득자	⑥ 성 명	* * *	⑦ 주민등록번호	****** *******		
	⑧ 주 소	*** *** *** **				

계좌명세	⑨ 계좌번호	**********	⑩ 연금수령 개시신청일	2019. 1. 5.	⑪ 연금계좌평가액	40,000,000

⑫ 연금수령 기산연도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	⑭ 연금 수령연차	⑮ 연금수령한도 ([⑪/(11-⑭)]×120%)
2019	2013.3.1. 전[v] 이후[ ]	6	9,600,000

소득명세	⑯ 귀속연월	2019.05				⑰ 퇴직분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이연퇴직소득 전환분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㉒ 부득이한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연금수령	⑱ 일반연금				9,600,000		
		⑲ 의료비인출					㉓ 연금외 수령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⑳ 부득이한 사유						
	㉑연금외수령					400,000		

세액명세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㉔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㉕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㉖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9,600,000	480,000
	퇴직소득	㉗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㉘ 퇴직분				
	기타소득	㉙ 연금외수령		15%	400,000	60,000

납부명세	구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㉚ 연금소득	종합과세	9,600,000	480,000	48,000	528,000
		무조건분리과세				
	㉛ 퇴직소득					
	㉜ 기타소득		400,000	60,000	6,000	66,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❷ 퇴직	❸ 세액이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사업자등록번호
□□□-□□-□□□□□

[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단위 : 원)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소득원천			① 과세제외 금액	② 소득이연 전환분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④ 세액공제분 (소득공제분)	⑤ 운용수익
⑥ 과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35,000,000	
	감소	이체					
		인출					
	전기말잔액					35,000,000	5,000,000
⑦ 당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10,000,000	
	당기잔액					25,000,000	4,000,000

작 성 방 법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1. ① 과세제외금액 란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3.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5.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10.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 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2.「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카 종합사례 Ⅴ (연금저축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1. 홍길동씨(60세)는 2019.1.1.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2019.1.5.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 2019년에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인출금액 중 4,000,000원은 부득이한 사유(요양 요건 충족)로 인출하였다(2013.3.1. 전 연금계좌 가입).
2.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은 40,000,000원*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은 34,000,000원임
   * 소득원천 : 세액공제 35,000,000원, 운용수익 5,000,000원

☞ 홍길동씨가 2019년에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는 얼마인가?

① 연금계좌 평가금액

소득 원천		연금수령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	인출금액
평가금액		40,000,000	34,000,000	
인출 순서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	-	
	소득·세액공제금액	35,000,000	29,000,000	6,000,000
	운용수익	5,000,000	5,000,000	

② 연금계좌 납입분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 계산시 인출금액에서 차감한다.**

○ 연금수령한도 : {40,000,000/(11-6)} × 120% = 9,600,000원

○ **연금계좌 인출액(6,000,000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4,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원은 연금수령 한도내 인출에 해당**하므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4,000,000원도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자 연령이 60세이므로 5%를 적용함

- 연금소득세 : 6,000,000 × 5% = 300,000원

③ 2019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 300,000원

〈과세소득을 연금수령한도 초과하여 인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16.2.25.> (앞쪽)

관리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v]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①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①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v]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v]부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 ** *****	② 법인명(상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 *******	⑤ 소재지(주소)	*** *** *** **		
소득자	⑥ 성 명	* * *	⑦ 주민등록번호	****** *******		
	⑧ 주 소	*** *** *** **				

계좌명세	⑨ 계좌번호	**********	⑩ 연금수령 개시신청일	2019. 1. 5.	⑪ 연금계좌평가액	40,000,000

⑫ 연금수령 기산연도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	⑭ 연금 수령연차	⑮ 연금수령한도 ([⑪/(11-⑭)]×120%)
2019	2013.3.1. 전[v] 이후[ ]	6	9,600,000

소득명세	⑯ 귀속연월	2019.05				⑰ 퇴직분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이연퇴직소득 전환분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㉒ 부득이한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연금수령	⑱ 일반연금				2,000,000		
		⑲ 의료비인출					㉓ 연금외 수령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⑳ 부득이한 사유				4,000,000		
	㉑연금외수령							

세액명세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㉔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㉕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㉖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6,000,000	300,000
	퇴직소득	㉗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㉘ 퇴직분				
	기타소득	㉙ 연금외수령		15%		

납부명세	구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㉚ 연금소득	종합과세	2,000,000	300,000	30,000	330,000
		무조건분리과세	4,000,000			
	㉛ 퇴직소득					
	㉜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❷ 퇴직	❸ 세액이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사업자등록번호
□□□-□□-□□□□□

[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단위 : 원)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소득원천			① 과세제외 금액	② 소득이연 전환분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④ 세액공제분 (소득공제분)	⑤ 운용수익
⑥ 과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35,000,000	
	감소	이체					
		인출					
	전기말잔액					35,000,000	5,000,000
⑦ 당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6,000,000	
	당기잔액					29,000,000	5,000,000

작 성 방 법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1. ① 과세제외금액 란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3.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5.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10.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 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2.「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8 연금소득 Q&A

국세청
www.nts.go.kr

Q

1. 연금계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로 ①연금저축보험, ②연금저축펀드, ③연금저축신탁, ④연금저축공제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로 ①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②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가 해당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는 퇴직연금계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2.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계좌의 승계는 상속인에게 가능하나요?

A

○ 연금계좌의 승계는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 중 배우자만 가능하며, 배우자 외에는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 승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사실을 확인한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3. 아버지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아들의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아들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금소득이 공적연금인지 또는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공적연금인 경우, 아버지의 총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소득금액(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적연금인 경우, 아버지의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였다면 동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4. 연금계좌의 금액을 중도인출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이며, 인출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A

○ 연금외수령으로 중도인출하더라도 법률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3.3~5.5%)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천재·지변 ②가입자의 사망 ③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④연금취급자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⑤해외이주 ⑥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입니다.

○ 다만, ③번 사유의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는 금액(200만원)과 실제 소요되었음을 입증하고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료비, 간병비 비용, 휴직시 급여보전비용(월 15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11조의2 참고)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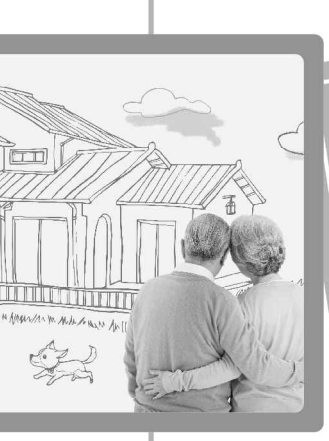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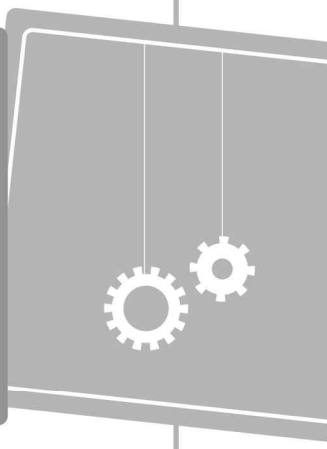

1) 연금소득의 유형 재분류 (소법 §20의3)

종전에는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에 따라 열거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규정함으로써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

종 전	개 정
□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에 따라 열거	□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재분류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①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연금
②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교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령	②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다음의 소득 (1) 퇴직소득 과세이연분 (2) 연금계좌 자기불입분 (소득공제 받은 분에 한함) (3) 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 (4) 그 밖에 연금계좌에 과세이연된 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퇴직보험금에 따른 연금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따른 연금	
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률」에 따른 연금	
⑦ 기타 유사한 연금	③ ①·② 외 법률에 따라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연금소득

2)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확대 (소법 §14③)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합하여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분리과세 하였으나, 공적연금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조정

3)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 (소법 §129①)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5%로 정률 적용하였으나, 연금소득자의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세율 인하

연령 및 유형	원천징수세율	비 고
일반적인 경우	5%	중복적용시 유리한 세율 적용
종신형 수령, 70세 이후 수령	4%	
퇴직소득 수령, 80세 이후 수령	3%	

4) 연금계좌의 범위 (소령 §40의2①)

사적연금의 유형을 연금계좌로 통합하고 일반 계좌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연금저축" 표시의무를 부여하였으며, 2013.1.1. 이전에 가입한 퇴직보험,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계좌는 연금계좌로 간주

5) 연금저축계좌의 취급기관 및 계약의 범위 (소령 §40의2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의 취급기관을 「소득세법 시행령」 금융소득 분류체계에 맞춰 재조정 하고, 연금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연금지급 등 연금계좌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연금관리가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를 연금계좌 취급기관으로 규정

6) 연금계좌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완화 (소령 §40의2②)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금보험료 납입규정을 통합하되,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재원 확충을 지원

종 전	개 정
▢ 연금상품 가입대상 ○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① 최소 납입기간 : 10년 ② 납입한도 : 연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가입대상 ○ 연령제한 삭제 ▢ 연금계좌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① 최소 납입기간* : 5년 ②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분기한도 폐지) ③ 연금수령개시 후 추가납입 불가

7) 연금수령요건 개선 (소령 §40의2③, §187의2)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후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

연금상품 연금수령요건	연금계좌 연금수령요건	비 고
① 최소 납입기간(10년) 경과 후 인출 ② 55세 이후 인출 ③ 5년 이상에 걸쳐 인출	① 최소 납입기간(5년) 경과 후 인출 ② 55세 이후 연금개시신청 후 인출 ③ 연간 연금수령한도내 인출 ④ 사망일까지 수령하며, 수령기간 중 해지 불가	2013.2.15.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8) 연금수령한도 신설 (소령 §40의2③~⑤)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한도 내 금액은 연금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text{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연금수령개시일
**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

9)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신설 (소령 §40의3①~②)

종전에는 연금수령시 연금개시일의 과세비율로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산정하였으나,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시 소득원천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출순서를 규정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 연금수령시 연금개시일의 과세비율로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 과세대상 연금외소득 산정 ○ 해지 및 연금외수령시 수령일 현재 과세비율로 산정 ○ 연금외소득은 계좌유형에 따라 소득 구분 ① 퇴직연금계좌 → 퇴직소득 ② 연금저축계좌 → 기타소득 (사망으로 인한 일시금은 연금소득)	▢ 연금계좌의 소득원천에 따른 인출 순서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모두 해당) ① 과세제외금액(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② 이연퇴직소득(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퇴직소득 포함) ③ 그 밖의 소득금액(소득공제액, 운용소득) ▢ 수령방법에 따른 소득 구분 ○ 연금수령 → 연금소득 ○ 연금외수령 → 퇴직·기타소득 ▢ 인출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출 순서(연금수령분 → 연금외수령분)

10) 연금계좌간 이체요건 보완 (소령 §40의4)

연금수령개시 전의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고, 일부 금액 이체시 이체순서는 연금계좌 인출순서(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그 밖의 소득)를 준용 함.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는 이체와 함께 연금계좌이체확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만, ①신계좌(2013.3.1. 이후 가입 계좌)의 구계좌 이체, ②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간 상호 이체, ③퇴직연금계좌의 일부 이체는 이체가 아닌 인출로 규정

11)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요건 (소법 §21①)

연금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다만, 2013.1.1. 전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그에 대한 운용소득은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구분

종 전	개 정
▢ 연금상품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 ① (퇴직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② (연금저축) - 납입기간 만료 전 해지로 받는 일시금 소득 - 납입기간 만료 후 연금외 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요건 ① 연금수령으로 인출되는 금액이 아닐 것(연금외수령) ② 사용자부담금이 아닐 것(자기부담금, 운용수익) * 사용자부담금의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

12)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소법 §14③7호나목, §129①6호)

종전에는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하였으나,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인출사유 및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적용

소득원천	소득구분	일반 연금외수령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용자부담금	퇴 직	기본세율	기본세율
자기부담금	기 타	20%	15%
운용수익	기 타	20%	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과세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13)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소령 §20의2)

연금계좌를 연금외수령하는 부득이한 범위를 조정하여 연금재원을 확충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부득이한 사유	연금계좌를 연금외수령하는 부득이한 사유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④ 연금취급자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⑤ 퇴직, 해외이주, 폐업 * 기타소득으로 과세(20%)하나, 사망으로 해지시 연금소득 과세 *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④ 연금취급자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⑤ 해외이주 ⑥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 기타소득으로 과세(20%)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15% 분리과세 *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관련 확인 서류를 구비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

14) 연금계좌 승계 (소법 §44②, §74①, 소령 §100의2①~②, §40의2④2호)

피상속인의 연금수령 지위를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사망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함(다만, 상속인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

배우자(상속인)가 연금계좌를 승계한 날에 연금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금개시 및 원천징수세율을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하며, 피상속인이 연금개시한 경우에도 추가 납입 가능하도록 함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 납입요건(5년)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과 연금수령연차 산정을 위한 기산연차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

15)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시 세액정산 방법 및 절차 (소령 §100의2②~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과 승계신청일 또는 사망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도록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등의 납세편의를 제고

① 연금계좌의 승계신청이 있는 경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한 소득에 대해 정산(상속인 기준 적용 세액 - 피상속인 기준으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② 연금계좌의 승계신청이 없는 경우
-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과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소득에 대해 정산(사망확인일 현재 연금외수령 가정시 세액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16)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 (소법 §51의3)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중 ①지급받은 퇴직금을 환급받기 위해 납입하는 경우 ②연금계좌간 이체를 위해 납입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17)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확대 (소법 §143의4⑤)

공적연금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없이 연말정산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공적연금이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하도록 함

18)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의 계산 (소령 §40, §42의2②~③)

과세기준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납입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과 기과세분을 반납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19) 연금소득 등 수입시기 조정 (소령 §45, §49, §50)

종 전	개 정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舊 조특법 제86조) : 중도해약일, 연금외수령일	※ 개인연금저축 일몰종료(조문 삭제) (기계약분 경과조치)
□ 연금저축 해지 및 연금외수령 : 지급받은 날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 : 연금외수령일
□ 퇴직소득 ○ (원칙) 퇴직한 날 ○ 잉여금처분에 따른 지급 : 잉여금처분 결의일 ○ 퇴직소득 과세이연계좌 인출 등 : 지급받은 날	□ 퇴직소득 ○ (원칙) 퇴직한 날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 지급받은 날
□ 연금소득 :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 연금소득 ① 공적연금소득 : 지급받기로 한 날 ② 연금계좌분 : 연금수령일 ③ 그 밖의 연금소득 : 지급받은 날

20) 연금계좌 과세제외금액의 범위 (소령 §40의3②)

(1) 연금계좌에 있는 과세제외금액의 범위 및 인출순서(①→②→③)

①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②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

③ ①·②외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금액

(2) 과세제외금액의 확인(확인제외금액은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간주)

① 당연제외금액(위 ①·②) : 인출자의 입증 필요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

② 확인제외금액(위 ③) : 인출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

21) 연금계좌 과세제외금액 확인절차 및 방법 (소령 §201의10)

(1) (적용대상) 다음 중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려는 사람

① 공적연금 및 일시금 수령자

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③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해지하려는 사람(기타소득)

(2) (제출서류) 연금보험료등 소득공제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발급받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취급자는 과세제외금액(납입액 합계 - 소득공제액) 확인(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함)

(3)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제외금액 : Min(①, ②)

① [해당 연금계좌 + 다른 연금계좌] 납입합계액 - 소득공제액

② 해당 연금계좌 납입액

※ 확인한 과세제외금액은 연금계좌납입명세서에 기재되어 국세청에 통보

1)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소령 §40의2③)

가입자가 보유한 전체 금융기관 연금계좌 중 1개의 의료비인출 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의료비인출 전용계좌에서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3~5%)

2) 연금계좌에 대한 의료비계좌 지정 및 의료비인출 절차 (소칙 §16의2)

1인 1계좌 지정을 위한 절차 마련 및 동일 의료비에 대한 중복 의료비인출 방지

가)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연금가입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계좌지정 신청시 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중복여부 확인(은행연합회) 후 계좌지정

나) 의료비인출 신청 절차

① (인출신청) 의료비지급 영수증 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의료비인출 신청

② (계좌변경시 인출절차) 변경된 의료비연금계좌 취급자는 변경전 계좌에서 동일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인출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지급

3)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세율 인하 (소법 §129①)

연금소득 세액공제율(12%)을 감안하여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종 전	개 정
☐ 자기부담 및 운영수익 부분 ○ 통상적인 경우 : 20% ○ 부득이한 경우 : 15% ○ 위외 연금외수령 : 20%	☐ 자기부담 및 운영수익 부분 ○ 통상적인 경우 : 15% ○ 부득이한 경우 : 12% ○ 위외 연금외수령 : 20%

4)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시 부양가족 명확화 (소령 §20의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부양가족의 범위를 기본공제 대상(소득기준 제외)으로 명확히 함

5)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하는 경우 12% 분리과세 (소령 §42)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수령하는 경우 12%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로 세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함

6) 공적연금의 연금 · 퇴직소득 산정방법 명확화 (소령 §40, §42의2)

연금과세제도 시행일(2002.1.1.)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수령액에 대한 계산방식 명확화.

과세기준일 이후 재임용 · 재가입하여 기존에 수령한 퇴직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 퇴직 · 연금소득금액에서 기과세된 반납 퇴직금을 차감하였으나 재임용일,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퇴직 ·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변경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금액 ○ 공적연금 : ①, ② 중 작은 금액 ① 과세기준일(2002.1.1) 이후 연금보험료와 이자의 합계 ②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한 연금보험료	☐ 퇴직소득금액 산정방식 변경 ○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반환 일시금 : (좌동) ○ 위 외의 일시금 $\text{일시금 수령액} \times \frac{\text{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text{총 납입월수}}$

7)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연금수령한도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 신청일로 명확화 (소령 §40의2)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산정시 연금계좌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개정하여 연금수령신청시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합리화

8)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신설 (소법 §59의3, 소령 §40의3)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연금수령신청일까지의 총납입액을 세액공제하고 연금수령 신청일 이후 인출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9)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소령 §118의3)

가입자가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여 공제한도 초과 납입금을 다음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납입금은 전환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함

10) 사망시 연금계좌 세액정산방법 합리화 (소령 §100의2)

사망 이후 인출된 금액 및 연금계좌의 잔여액 중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봄

11) 연금계좌에서 지급하는 소액의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소칙 §97)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연금계좌 사후관리를 위해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은 제외함

3 2015년 개정 법령

1)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2) 퇴직소득세액 정산 규정을 '12.12.31. 이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에 적용
3)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요건 신설
4)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5)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7)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 확대
8) 국민연금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분할 지급되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변경
9)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
10)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 특례
11)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12) 연금계좌에서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13)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완납적 분리과세
14)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15)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
16)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방법 명확화
17)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완화
18)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 시 인출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
19)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절차 간소화
20) 연금계좌에 퇴직소득 입금 시 환급신청 절차 보완
21) 연금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개정

1)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소법 §48, §55)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과세방식 (①~④순서로 계산)	□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정률공제(40%)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 정률공제(40%) 폐지
② (연분) ① ÷ 근속연수 × 5* * 연분연승 적용비율	② (연분) ① ÷ 근속연수 × 12
③ ② × 기본세율(6~38%)	③ (② - 차등공제) × 기본세율(6~38%) 환산급여 / 차등공제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④ (연승) ③ ÷ 5 × 근속연수	④ (연승) ③ ÷ 12 × 근속연수

〈개정이유〉 소득 수준별로 차등과세하여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퇴직소득세액 정산 규정을 '12.12.31. 이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에 적용 (소법 §148)

종 전	개 정
□ 최종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중간정산한 퇴직소득과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에서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소득세로 함	
□ '12.12.31. 이전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금과 세액 정산 불가	□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 신설 ○ '12.12.31. 이전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도 세액 정산을 허용

〈개정이유〉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와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세액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요건 신설
(소령 §38, 소칙 §15의3신설)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 설〉	○ 급여 적립 요건 근로자가 납입 여부 및 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개정이유〉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방법을 명확화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

4)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소법 §22)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 ① - ②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 퇴직소득금액에서 '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퇴직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임원퇴직소득 한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3** * 평균급여 : 퇴직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명확화 - 퇴직소득금액에서 2011.12.31.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만, 2011.12.31. 당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음(기존 방식이 유리하면 기존 방식 적용 허용) ○ 총급여 명확화 - (총급여) 소득세법 §20① 1호* 및 2호**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령 §44④2의 임원퇴직금 한도규정과 동일

〈개정이유〉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15.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소령 §43②, 법령 §44)

종 전	개 정
□ 재직 중에 퇴직소득 중간지급이 가능*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가능	□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 삭제
○ 근로자, 임원 공통 적용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로 임금 감소 - 퇴직연금제도 폐지	(좌 동)
○ 임원만 적용하는 사유 -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삭 제〉

〈개정이유〉 임원과 근로자간 형성평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 받는 경우부터 적용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조특법 §86의3)

종 전	개 정
□ 납입 시	□ 공제 대상 소득 변경
○ 공제 한도 : 300만원	○ (좌 동)
○ 공제 대상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수령 시	□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비과세 ○ 운용수익 : 이자소득 과세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좌 동)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폐업 및 노후를 대비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 다만, '15.12.31.까지 신청 시 개정규정 적용 가능

7)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 확대 (소령 §43①)

종 전	개 정
□ (원칙)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변경되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 사업양도 -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좌 동)
〈신 설〉	- 사용자가 같은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개정이유〉 퇴직연금 재원 축적을 유도

〈적용시기〉 '15.2.3.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8) 국민연금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분할 지급되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변경 (소령 §50②)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원칙 : 퇴직일	
○ 예외 : '퇴직일'이 없는 국민연금 일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 * 최소납입기간(10년) 미충족인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향후 건설업에서 종사하지 않을 경우	○ 지급받는 날 → 최초로 지급받는 날
- 퇴직소득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 각 지급분이 별도의 퇴직소득임 * 사용자가 사용료부담분 일부를 미납하는 경우 납부분부터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납부 시 지급	- 퇴직소득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 최초로 지급받는 날에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부족분 추가 징수

〈개정이유〉 퇴직소득 분할 지급 시 세액계산 합리화

〈적용시기〉 '15.2.3.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9)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
(소법 §129, §14, 소령 §42)

종 전	개 정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퇴직소득과 해당 퇴직소득세	□ (좌 동)
□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방식	□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30% 세액 경감
○ 연금 수령 시 - 분리과세 기준금액(1,200만원) 이하분 : 3% 분리과세 - 분리과세 기준금액 초과분 : 이연퇴직소득세 징수 이연퇴직소득세 × (분리과세기준금액 초과분 / 이연퇴직소득)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 70%
○ 일시금 수령 시 - 이연퇴직소득세 징수 이연퇴직소득세 × (일시금 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 (좌 동)

〈개정이유〉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의 연금수령 유도

〈적용시기〉 '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 특례

(법률 제11611호 부칙 §20, 소령 §42의3 신설)

종 전	개 정
□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일시금 수령 시 과세 방법	
○ '12년 이전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의 경우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음("소득이연 퇴직소득")	○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 - (이연세액) '14.12.31. 기준으로 소득이연 퇴직소득 전액을 인출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
○ '13년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의 경우 -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퇴직연금계좌 입금시 해당 퇴직소득 세액의 징수를 이연("세액이연 퇴직소득") - 수령 시 이연된 퇴직소득세액을 징수	

〈개정이유〉 세제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도를 정비

11)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소법 §59의3)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 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원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개정이유〉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 유도

〈적용시기〉 '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연금계좌에서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소법 §14, §129, 소령 §40의2, 소령 §42)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에 가입일부터 5년 경과하여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연금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4① 공제대상 의료비 중 직접 부담금액 ** 의료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10년 분할 수령	
○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3~5%)	○ (좌 동)
○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합산과세(6~38%)	○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분리과세(3~5%)
□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12%) * 가입자의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 등	□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기타소득 →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3~5%)

〈개정이유〉 노후 의료비 및 부득이한 지출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완납적 분리과세 (소법 §14)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중도해지 등	
○ 수령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5%)	○ (좌 동)
- 수령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6~38%)	- 종합과세 → 분리과세(15%)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연금수령 유도
〈적용시기〉 '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소법 §51의3, §61)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 공제 순서 규정 ○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개정이유〉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순서를 명확화

15)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 (소법 §84)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5만원 이하로 분할 인출하여 과세회피 가능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

〈개정이유〉 과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6)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방법 명확화 (소령 §40의3)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납입원천별 과세방식 납입원천 / 과세방식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3%)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3~5%) * 연금계좌에 납입한 퇴직금	□ (좌 동)
□ 연금계좌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 각 납입원천별 잔여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원금손실 시 각 납인원천별 잔여액을 알아야 인출 시 정확한 과세가 가능	□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납입 원천별 손실순서 규정 ○ ①→②→③의 순서로 손실이 반영되고, 손실 회복 시 반대 순서로 회복 ① 세액공제 받은 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17)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완화 (소법 §143의7, 소령 §201의8)

종 전	개 정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공적연금,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완화
○ 공적연금소득 : 지급일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발급 시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사적연금소득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신 설〉	○ (발급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통장 등에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할 수 있음 - 수령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으로 통보 가능 * 이자 · 배당소득과 유사한 수준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여

〈개정이유〉 공적연금기관 및 금융기관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15.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 시 인출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 (소령 §20의2, 소칙 §11의2)

종 전	개 정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인출액 전액을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금융회사 파산	□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만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 * 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요양기간,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

〈개정이유〉 불필요한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여 연금수령 유도

〈적용시기〉 '15.2.3.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9)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절차 간소화 (소령 §40의2)

종 전	개 정
□ 연금수령 개시 또는 해지 절차	□ 절차 간편화
○ 법정 서식을 금융회사에 서면제출	○ 법정 서식 폐지 (금융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신청) ○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약정하는 경우 사전약정한 날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세정협력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5.2.3.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연금계좌에 퇴직소득 입금 시 환급신청 절차 보완 (소령 §202의3)

종 전	개 정
□ 퇴직금을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 기 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좌 동)
□ 환급 신청 절차	□ 환급 신청 절차 변경
① 연금계좌에 퇴직소득 입금 ※ 입금 후 환급신청 기한 없음	① 연금계좌에 퇴직소득 입금하면서 금융기관에 환급신청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퇴직소득세 환급신청	② 금융기관이 연금계좌 가입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신청

〈개정이유〉 연금계좌에 퇴직소득세를 환급하는 방식을 합리화

〈적용시기〉 '15.2.3. 이후 퇴직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연금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개정 (소령 별표3)

종 전	개 정
□ 표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미반영	표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반영

〈개정이유〉 표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미반영

〈적용시기〉 '15.2.3.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4 2016년 개정 법령

1) 개인형퇴직연금 - 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 (소령 §40의4①)

종 전	개 정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이체 시 인출로 보아 소득세 과세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 *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개정이유〉 연금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2016.2.17.)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2)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확대 (소득령 §203③)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 세액정산 특례 확대
○ 퇴직소득을 중간지급 받은 경우에도 중간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하여 소득세 정산 가능(중간지급시 기납부한 세액은 차감) ※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의 경우 중간지급을 받으면 추후 퇴직소득 지급시 소득세 정산 불허	○ (좌 동)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의 사유로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추후 퇴직소득 지급시 소득세 정산 허용

〈개정이유〉 퇴직소득 세액정산 관련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2016.2.17.) 이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 연금인출시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 (소령 §40의2③)

종 전	개 정
□ 연금수령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
○ 연금가입자의 사망	○ (좌 동)
○ 연금가입자의 해외이주	○ 연금가입자의 해외이주 -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연금수령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2017.2.3.)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부담 경감 (소령 §201의10)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인출시 과세제외금액* 확인 방법 * 연금계좌 납입시 공제받지 않은 금액 등	□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부담 경감
○ 연금보험료 등 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와 함께 다른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연금수령 개시·해지된 계좌는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제외	○ (좌 동) - 연금수령 개시·해지된 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허용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해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을 확인 가능한 경우 연금 보험료 등 공제확인서만 제출

〈개정이유〉 연금계좌 가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17.4.1.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18·'19년도에는 주요 개정사항 없음

6 2020년 개정 법령(안)

* '19. 8. 27. 정부안 발표

1) 이연퇴직소득의 정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법 §129)

종 전	개 정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 연금수령시점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개정이유〉 퇴직금의 장기연금형태 수령 유도

〈적용시기〉 '20.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 (소령 §42의2)

종 전	개 정
□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의 범위	□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 범위 조정
○ (범위) 국내에서 과세되는 ①봉급·급여 및 ②주총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등 근로소득	○ (좌동)
〈추가〉	○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 다만, 국내 근무 시 지급받는 금액 상당액의 범위로 한정

〈개정이유〉 해외 파견 임원과 국내 임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 (소법 §20의3)

종 전	개 정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 지급배수 하향 조정
○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 전체 퇴직소득 - '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 배수	○ (좌 동)
- 지급배수 : 3배	- 지급배수 : 2배

〈개정이유〉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적용시기〉 '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국세청
www.nts.go.kr

본 책자는 2019.8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개정안 등을 기초로 하여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한 것입니다. (발행일 2019.9.1.)

본 책자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 내용을 복사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본서의 내용 중에 약어로 표시된 관계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 법 §	소득세법
소 령 §	소득세법 시행령
소 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 법 §	법인세법
법 령 §	법인세법 시행령
법 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청
www.nts.go.kr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발 행 일 자 : 2019년 9월

발 행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 필·편 집 : 원천세과장 지 성
행정사무관 김 재 산
국세조사관 김 태 형

※ 본 책자를 복사하거나 출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